

함께하는 공익활동·지속가능한 경기

2020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민관합동  
정책토론장사업  
결과보고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Gyeonggi center for Public Interest Support

함께하는 공익활동·지속가능한 경기

2020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민관합동  
정책토론장사업  
결과보고서**

1	사업개요	06
2	활동내용	06
3	주요성과	06
4	활동사진	07

첨부자료

1) 경기도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정책토론회 자료집	11
2) 민관합동정책토론회 속기록	71
3) 경기도 민관합동정책토론 결과 (경기도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정책과제 제안)	91

## 1 사업개요

### 1. 사업목적

- 공익활동 참여자 및 단체, 경기도민, 시·군, 도의원, 공무원 등이 다함께 참여하여 경기도와 시·군 지역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장 마련
- 경기도민들의 자발적 공익활동의 결과가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공익활동이 지역 현안 해결과 연계되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화 추진
- 경기도 시민사회 관련 제도, 정책 변화에 따른 공론장 조성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0년 5월 ~ 2020년 12월
- 사업대상: 경기도를 변화시킬 공익활동 조사, 발굴 및 정책화
- 사업예산: 총 10,000천원
- 사업내용
  - 경기도에서 진행된 공익활동 사례 분류 및 분석
  - 경기도의 공익활동 관련 법·제도 모니터링 및 개선 과제 도출
  - 행정지원단과 협력하여 각 분야 관계자들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정책 방안 토론

## 2 활동내용

일 자	내 용
4월~ 6월	민관합동정책토론 정책연구팀 제안 및 구성
8월 28일	정책연구팀 1차 준비회의 (민관합동정책토론회 기획)
9월 29일	정책연구팀 2차 준비회의
11월 16일	경기시민사회발전 및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을 위한 경기도민관합동정책토론회 개최
12월 3일	정책연구팀 토론회 평가회의

## 3 주요성과

-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주최로 민관합동토론회 개최
- 경기도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6개 정책 발굴 및 제안

## 4 활동사진



1차 준비회의 (8월28일)



2차 준비회의(9월29일)



민관합동토론회(11월16일)



민관합동토론회(11월16일)



민관합동토론회(11월16일)



평가회의(12월3일)

## 첨부자료

- 1) 경기도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정책토론회 자료집
- 2) 민관합동정책토론회 속기록
- 3) 경기도 민관합동정책토론 결과  
(경기도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정책과제 제안)

첨부자료1. 민관합동정책토론회 자료집

새로운 경기 ▶ 공정한 세상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도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정책토론회**

2020. 11. 16.(월) 15:00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나눔 대회의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Gyeonggi center for Public Interest Support

## 경기도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정책토론회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을 위해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를 출범한 시점에서 경기도 공익활동에 대해서도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여러 관계자들과 함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 제정 등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큰 흐름에 맞추어 경기지역 시민사회현황 파악 및 과제 도출로 향후 경기도 공익활동의 방향 설정이 필요함
- 31개 시·군 비영리민간단체 실태조사를 통해 시·군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목 적

- 정부의 시민사회발전 흐름에 따라 경기도민 시·군 도의원, 공무원이 다함께 참여하여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마련
- 경기시민사회의 현황 파악을 통해 향후 공익활동의 방향 설정 마련
- 경기도 시민사회 관련 제도 및 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공론장 조성

### 개 요

- 일 시 : 2020년 11월 16일(월) 오후 3시
- 장 소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나눔 대회의실
- 주 최 :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 관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주 제 : 공익활동 제도와 정책변화, 경기시민사회 현황과 과제
- 참 여 : 시민사회활동가, 도의원, 공무원 등 20인 이내
- 주요내용 : 주제에 대한 전문가 발제, 관계자·전문가 지정 토론, 참가자 자유토론

### 프로그램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4:30 ~ 15:00	30	• 참가자 접수, 생활방역 수칙 준수	
15:00 ~ 15:10	10	• 인사말 - 정승현(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서남권(경기도 소통협치국장)	사회 : 이정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성장지원팀장)
15:10 ~ 15:50	40	• 발제1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변화 윤종화(시민사회발전위원회 소통협력분과위원장) • 발제2 경기시민사회현황과 과제 박은호(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연구위원)	
15:50 ~ 16:25	35	• 지정토론(좌장 : 송성영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장) - 김강식(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원) - 이정아(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박완기(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제도개선분과위원장) - 한유경(경기도 민관협치과 협치기획팀장) - 안명균(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16:25 ~ 16:55	30	• 참가자 전체 자유 토론	
16:55 ~ 17:00	5	• 폐회, 기념 촬영 등	

발제1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변화

윤종화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소통협력분과위원장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의 변화

윤종화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소통협력분과 위원장)

## 1. 들어가며

-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와 고민을 안겨주고 있음. 방역과 보건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기존에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음.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는 그 발발에서부터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가 겪는 고통은 왜 가중되는가,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 심화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의 사람들 간의 관계방식, 만남의 방식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자연과피와 감염병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등.

이러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코로나19로 인한 문제만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점점 더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새로운 문제가 그 위를 덮고 있다. 비단 크고 본질적인 문제들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확인하는 불편함들, 고쳐야 할 문제들 위에도 새로운 문제가 쌓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사람들은 기존의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더 복잡해지고 문제들이 엉겨있음을 알고 있다. 환경, 생활 안전, 플라스틱, 교육격차, 지역소멸, 청년 일자리, 고령화, 건강, 불평등, 기후위기 등 우리는 문제들에 빠져 살고 있다. 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접근이 결론적으로 시민사회의 활성화이자 시민의 공익활동에 대한 참여이다.

- 시민사회가 시민운동 차원에서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와 유형으로 성장하고 있음. 풀뿌리단체,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공익활동, 시민단체, 자원봉사 단체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와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의 결과인 측면도 있음. 특히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시민공익활동은 거의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 그렇다고 해서 정부 혹은 지방정부에서 시민사회를 적극적인 의미에서 파트너로 간주하고 시민사회의 본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음. 이는 지난 십수년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와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음.

- 미디어 환경의 변화, 개인 미디어, 정보의 생산과 유통 환경의 변화, 과학기술의 변화, 시민 주체성의 성장, 사회 문제 해결 방법론의 변화, 사회 주체들의 관계의 변화 등은 기존의 시민 운동 중심의 시민사회 환경에서 '신인류'가 등장하고 있음. 시민들은 특정한 조직에 소속되어 시민단체가 대리하여 사회문제, 사회 의제를 해결해주고 그 조직에 후원하는 지위에서 이제는 단순하게 문제해결로 인한 수혜자의 위치에서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있음.

- 한편,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한 국회 입법 환경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20대 국회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법 등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성장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노력이 있었으나 보수당의 반대로 무위에 그치곤 했다. 이제 국회에서 시민사회와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다수당이라는 점과 당·정·청에서도 시민사회활성화 기본법 등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하는 등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그런 반면 자칫 국회를 비롯하여 시민사회 내에서 관련법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충분하게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거나 정부와 시민사회, 국회, 청와대 등에서 세밀하게 입법 전략을 짜지 않을 경우에 자칫 병목현상을 스스로 만들어서 입법 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야당에 반대의 명분을 주어서 입법의 어려움을 자초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 내에서 부터 충분하게 논의하고 입법 대응전략을 짜야할 것임.

- 입법 환경이 우호적이라고 해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법을 꼭 관철시키겠다고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지 않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현재 논의 되고 있는 모든 법을 제·개정할 것인지, 꼭 얻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또 법률 간의 충돌이 되는 사항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임.

- 또한 제도가 변화되고 개선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시민사회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는다. 제도의 변화와 시민사회 활성화의 과제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사회문제 해결에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그 결과 시민 주체성이 성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임.

- 앞에서 다양한 유형의 시민활동이 성장하고 있다고 했으나 반면 시민사회의 분화는 한편으로는 성장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분리를 의미하기도 함. 즉 시민단체,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시민공익활동, 사회혁신 활동, 자원봉사 활동 등이 서로 연결되고 공유되며 사회문제해결을 위하여 협력하고 협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주체들이 목적의식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는 입법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각 영역이 필요한 법 제·개정에 힘을 쏟을 경우에는 우리 내에서 경쟁을 만들 수 있음. 매우 주의해야 할 요소임.

## 2.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입법의 필요성

- 한국사회는 시민사회 영역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정책적·전략적 접근을 해본 경험이 없음. 시민사회는 자원봉사 또는 자립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로 인해 한국 시민사회에서 시민사회는 사회문제 해결 및 발전의 동력으로서 성장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체 제도나 정부구조에 편입되거나 재정 및 기반의 취약성 등으로 급격히 악화 되는 상황을 맞이함.
- 김대중 정부 들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1999년)되어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이 실행되고, 노무현 정부에도 2003년 국무총리 산하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시민사회 관련 정책이 부분적으로 정책화되었지만 정부 차원의 시민사회 영역의 성장과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과 전략을 수립한 적은 없음.
-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과 정책, 지원체계가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함. 시민사회를 운동단체(애드보카시) 정도로 이해하는 편향적 시각을 넘어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 - 사회갈등 해결 및 통합,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지원, 인권 및 시민권 보장, 민주주의적 질서유지 및 강화, 시민교육 등 - 를 해결하는 시민 주체, 영역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자원봉사 영역이 아닌 국가 발전전략으로 정책화되어야 영역으로 인식되어야 함.

## 3.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이하 대통령령)'제정의 의미

지난 5월 26일 대통령령이 공포되면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음. 2003년 국무총리령으로 운영되어 왔던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규정'보다 훨씬 강화되었으며 시민사회발전위원회 3기까지는 차관급으로 운영되어왔으나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4기 위원회는 장관급으로 격상되었으며 그 권한도 심의의결기구로서 실질적인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게 되었음.

20대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과 권미혁 의원이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을 발의하였으며 무산되었음. 대통령령은 그동안 국회 상황 등으로 무산된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대체하는 교육지책의 의미도 있음. 향후 대통령령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의 실질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4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민간이 맡고 있으며 내부에 제도개선분과, 소통협력분과를 두고 활동을 시작하였음. 제도개선분과는 그 역할로써 대부분 시민사회발전과 관련한 입법 활동을 설정하고 있음.(아래 표) 소통협력분과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의 표준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 정부와 소통(현안 이슈에 대한 정부와 소통,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소통), 지역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협약 체결, 시민사회 국제협력기반 강화를 역할로 삼고 있음. 서울시는 지난 9월 18일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공표는 10월 5일)

그렇지만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전담 사무국 설치가 령에서 빠지는 등 시민사회발전위원회에 얼마만큼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현재 령에 따라서 국무총리실에서 시민사회활성화기본계획을 용역 발주하였으며 시민사회발전위원회에서 밀착해서 함께 검토하고 있음.

본령의 가장 큰 특징은 시도단위까지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과 또한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연구와 연구기관 선정 등의 규정을 두고 있어서 선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도까지 실질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게끔 하고 있다는 것.

<p><b>제1조(목적)</b> 이 영은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을 통해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b> ① 정부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시민사회의 자율성·다양성·독립성을 보장할 것</b></li> <li>2.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민 공익활동의 가치를 존중할 것</li> <li>3. 시민의 <b>공익활동을 위촉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없앨 것</b></li> <li>4. 시민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b>다양하고 공정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b></li> <li>5. <b>정책의 수립·시행·평가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소통·협력을 강화할 것</b></li> </ol> <p>② 정부는 <b>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제1항 각 호의 원칙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b></p> <p><b>제3조(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b> ① 정부는 제6조에 따른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b>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b>(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b>기본목표와 추진 방향</b></li> <li>2. <b>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추진과제</b></li> <li>3.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구축·강화 방안</li> <li>4.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 <b>전문가 양성 지원 방안</b></li> <li>5.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b>교육 및 홍보 방안</b></li> <li>6. <b>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자원 규모와 조달 방안</b></li> <li>7. <b>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시민사회 소통·협력과 공익활동 증진 지원 방안</b></li> <li>8. <b>시민사회의 국제협력 활성화 지원</b>에 관한 사항</li> <li>9. 그 밖에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b>제4조(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b> ① <b>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b>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b>매년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b>(이하 "<b>시행계획</b>"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p> <p>② <b>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b>은 제6조에 따른 시민사회발전위원회에 <b>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b></p> <p><b>제5조(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도계획)</b>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b>시·도계획</b>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

② 정부는 시·도지사에게 시·도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송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민사회발전위원회)** ①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증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정비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3.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자율성·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에 관한 사항
  4. **기부·나눔 확산** 등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시민참여 확산**에 관한 사항
  6.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시민사회의 **국제협력기반 강화 및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국무총리비서실장**
  2. 시민사회단체 또는 학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등 시민사회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국무총리비서실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를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관계부처 협의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이 속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심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비서실의 시민단체 지원 및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이 된다.
- ③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총리비서실의 시민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된다.

**제12조(관계 행정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시·도지사는 지역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포상)** 위원장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의 지정·운영)** ①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정부위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대학,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2.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3.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시민사회 관련 현황·통계 조사**
  5. 시민사회 관련 국내외 우수 사례 조사·연구
  6. 그 밖에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지정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③ 지정권자는 연구기관에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지정권자는 연구기관이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조사·연구 수행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과제 수행 및 시정 요구 등 연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정권자가 정한다.

4.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논의 중인 입법 과제

과제	법령명	목표	추진 및 입법 현황	주요 내용 및 과제
시민사회 기반 조성	① 시민사회발전기본법	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대 국회 -진선미의원(2018.3월)</li> <li>-권미혁의원(2019.1월)</li> <li>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안 주요내용 및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지자체의 책무)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책무 규정</li> <li>(국가기본계획 수립) 3년마다 국가기본계획 수립</li> <li>(시행계획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 매년 시행계획 수립</li> <li>(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총리 소속 심의·의결 기구 / 시도위원회 설치</li> <li>(지원센터 설립) 행안부에 중앙지원센터(재단법인)/시도센터 설립</li> </ul> </li> <li>⇒ <b>시민사회 관련 총괄법이자 기본법으로 의미</b></li> </ul>
	①-1.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 대통령령	제정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0.5.26.일 공표/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계획 수립) 3년마다 국가기본계획 수립,</li> <li>(시행계획 수립) 매년 국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 시도 시행계획 수립</li> <li>(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총리 소속 심의 위원회 / 시도위원회 설치</li> <li>(연구기관 지정)</li> </ul> </li> <li>⇒ <b>시민사회발전기본법 대행역할.</b></li> </ul>
비영리법인 및 단체 지원 및 관리	②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또는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대 국회 -이은권의원(2017.2)</li> <li>-윤호중의원(2017.8.)</li> <li>21대 국회 - 윤호중 의원 발의(2020.7) (<b>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안</b>으로 발의)</li> <li>법무부에서 <b>전면개정안</b>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안 주요내용 및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익위원회법의 성격 : 공익법인에 대한 통합관리 / 관리감독을 위한 규제법 성격</li> <li><b>추진체계 : 행정기구로서의 행정위원회로 공익위원회 설립</b></li> <li>공익법인의 규율 범위 : 현재 3,400여개(확대할 수 있는 유인책 필요)</li> <li>공익의 정의 및 범위 : 학술, 자선, 장학사업 3개 사업에서 공익활동 전반으로 확대</li> <li>공익위원회 기능 및 관리 주무부처 : 법무부 산하, 국무총리실 산하</li> <li>공익법인 인정 및 감독제도 도입</li> <li>공익법인에 대한 지원 :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기부금품법 특례 등의 지원이 강화</li> <li>공익법인 신청할만큼 유인책으로서는 미흡</li> </ul> </li> </ul>
	③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대 국회 -권미혁 의원 2016. 8.30</li> <li>-진선미 의원 발의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안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 : <b>상시구성원수 100명 이상 ⇒ 30명 이상으로 완화</b></li> <li>국가 기본계획 수립 : <b>5년마다 수립·시행</b></li> <li>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정부·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에서 수립</li> <li>비영리민간단체지원위원회 설치 : 국무총리 소속</li> <li><b>보조금 지원사업에 사업비 및 필요한 운영비 지원 : ‘사업비 지원 원칙’ 개정</b></li> <li>우편요금 외에 통신요금 지원.</li> <li><b>경영지원, 시설비·임대료 등 지원·용자,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b></li> </ul> </li> </ul>

과제	법령명	목표	추진 및 입법 현황	주요 내용 및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 및 시도별 비영리민간단체 통합지원센터 지정·지원</li> </ul> </li> <li>⇒ <b>시민사회발전기본법과 중복조항 삭제 필요(위원회, 각종계획, 지원센터 등 삭제)</b></li> </ul>
공익활동 지원 체계 구축	④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법)	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대 국회 -26개발의/폐지</li> <li>21대 국회 -9개 발의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안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록 기준금액 상향조정 : 예, 1,000원 ⇒ 3,000만원</li> <li>사후등록 및 변경등록 허용 : <b>초과 시 15일 이내에 등록청 보고</b></li> <li>공익법인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배제(기부금품법 특례 적용)</li> <li>기부금품 모집비용 비율 상향 : 예, <b>모집비용을 15/100 ⇒ 30/100 확대</b></li> <li><b>형벌 규정 삭제 ⇒ 과태료로 전환</b></li> </ul> </li> </ul>
		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부금품법 해설서 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부금품모집제도 해설서</li> <li>실무상 행안부나 지자체는 상근 직원의 인건비를 모집비용으로 해석하여</li> <li>모집비용이 아닌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을 제한</li> </ul>
	⑤ 지방재정법	법 개정	발의의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재정법 32조 2의 2항 지방보조금 조항 개정</li> <li>-<b>‘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b></li> </ul>
		규정 개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비 성격의 상근직원 의 인건비 사용은 어렵지만 <b>사업수행비 내에서 사업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 개정</b></li> </ul>
	⑥ 공익활동가 공제회법	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대 국회 -유민봉 의원 (16.12.30)</li> <li>21대 국회 -민형배 의원 입법 준비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안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제급여, 복지후생사업 등의 사업, 수익사업,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수행</li> <li>운영은 회원의 부담금, 법인 또는 단체 기부금, 공제사업 운영수익금 등으로 충당</li> <li>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공제회 보조·출연할 수 있도록 함</li> <li>주요 쟁점</li> <li>정부 및 지자체의 출연 시 특혜 시비 / 회원의 범위 불명화</li> </ul> </li> </ul>
	⑦ 보조금 내 인건비 지원	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재정법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li> <li>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비 성격의 상근직원 의 인건비 사용은 어렵지만 <b>사업수행비 내에서 사업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 개정</b></li> <li>원칙적으로 사업비에 한해 지원. 운영비 지원 제한</li> </ul>
	⑧ 민간위탁 제도 개선	지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가이드라인 제정</li> <li>정부혁신 과제론 논의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행안부)는 민간위탁 운영지침을 배포하고 지자체에게 권한을 위임 주장</li> <li>위임규정이 불명확해 지자체는 지방재정법 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근거해 민간위탁 운용</li> <li>⇒ <b>정부의 민간위탁 운영지침 개정 및 새로운 가이드라인 작성해 지자체에 시달 필요</b></li> </ul>
	⑨ 비영리일자리와 고용지원	규정 개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부 운영메뉴얼 개정</li> <li>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에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노동부 일자리 및 고용 지원규정과 매뉴얼에 <b>비영리민간단체 지원’명확화 시달</b></li> <li>공익활동을 국가 고용 및 직업으로 인정, 일자리 통계 포함</li> <li>비영리 고용 및 일자리 플랫폼 구축</li> </ul>

과제	법령명	목표	추진 및 입법 현황	주요 내용 및 과제
	⑩ 비영리 회계 투명성	양식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법 시행령 개정 또는 공시양식 개선</li> <li>기부금품법 개정</li> <li>공익위원회법 제정 등과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시제도 개선 : 중복보고(주무관청, 기재부/국세청/행안부) 통합, 공시양식 개선</li> <li>공익법인 통합관리체계 구축(공익위원회 설립 등)</li> <li>소규모 공익법인 지원 : 교육, 컨설팅, 회계지원 등</li> <li>공익단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적인 평가시스템 구축</li> </ul> <p>⇒ 현재 「공익네트워크 우리는」과 연대회의에서 공시양식 개선안을 국세청에 제안 이에 국세청에서 긍정적 검토 중</p>
시민교육	⑪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대 국회 - 남인순 의원 발의</li> <li>- 소병훈 의원 발의</li> <li>21대 국회 - 남인순 의원 발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안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li> <li>-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제7조) 및 정부·시도의 연도별 민주시민교육 계획 수립(제8조)</li> <li>- 심의·의결 기능의 행정안전부장관 소관 민주시민교육위원회(제9조)</li> <li>-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원 설립(제12조)</li> <li>- 시도 민주시민교육센터 시·군·구 민주시민교육 학습기관 설치 또는 지정(제14조)</li> <l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기관 활동 경비지급 가능(제16조)</li> </ul> </li> <li>주요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무부처 / 중간지원조직 설립방식(민주시민교육원 등) / 위원 구성 방식</li> </ul> </li> </ul> <p>⇒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민주시민교육지원법TF 운영 및 연구용역 수행 중 이전 반대입장에서 추진 가능 입장으로 변화</p>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제도개선분과)

## 5. 결론에 대신하여

- 우리사회는 난제에 포위되어있다고 한다. 난제라 하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누구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불편과 고통을 주기도 하며, 그 해결과정도 매우 복잡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의 노력만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또한 시장은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더욱 더 복잡하고 어렵게 하기도 한다. 이제는 크게 보아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사회문제를 두고 어떻게 자원을 연계하고 협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작게는 하나의 문제를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그야말로 협력적 문제해결을 추구해야 한다. 때로는 어떤 문제를 두고 갈등하는 당사자들까지도 한자리에 모여야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 관계의 변화가 문제해결의 출발이다.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가운데 시민의 참여, 발상과 상상의 전환, 새로운 과학기술 활용하여 실험과 도전을 하고 결국 우리사회의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면서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바로 시민사회가 사회문제해결의 주체로 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바로 위해서 살펴본 내용이 그것이다.

- 지역문제해결을 통한 지역사회혁신이 확산되려면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동일한 해법, 동일한 방식으로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우리 앞에 쌓이고 있는 문제가 그 증표이다. 이렇게 해야 한다. 상호 자원 연계, 각 영역이 갖고 있는 정보 공유, 상호 협력하는 방식에서 해당 문제에 어울리는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사회문제와 과학기술의 만남은 매우 중요하다. 이제 과학기술은 사회와 함께, 사회를 위하여 작동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과 사회문제의 만남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양한 방법과 새로운 해법을 찾아낼 수 있게 한다.
- 무엇보다 민간이 사회문제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세심한 기획이 필요하다. 시민은 정책과 문제해결에 따른 수혜자에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결자가 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 시민들의 공익활동, 마을공동체 활동, 시민단체 활동을 비롯한 사회혁신 활동은 바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다. 시민사회발전 관련법들은 바로 시민, 시민사회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시켜주는 자양분이다.
-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과 협업이 그동안 십수년 간 노력해 온 시민사회 발전 관련법들의 입법 환경을 우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점이다. 시민 사회내에서 협력하지 않고 경쟁한다면 결국 가장 좋은 입법 환경에서조차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다음으로 우선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전국적인 분위기 조성하고 관련한 활동을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시민단체,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자원봉사, 시민사회지원조직 등 여러 분야에서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는 바, 이러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도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함.
- 2020년과 2021년은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임. 몇 가지 우려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가장 우호적인 환경임에 분명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서 입법 전략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국회 대응, 시민사회 공감대 형성 노력, 정부에 대한 협력과 압박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시민사회발전 기본법, 민주시민교육법, 공익위원회법, 기부금품법 등등이 조밀하게 작동하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그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발제2

# 경기시민사회 현황과 과제

박은호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연구위원

## 경기시민사회 현황과 과제

박은호(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운영위원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연구위원)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각 부문운동의 폭발적 분출과 함께, 전국단위의 시민운동과 풀뿌리 지역시민운동이 태동되고 성장해 왔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정권의 탄압과 비협조 등으로 인한 어려움도 겪었다. 이후 인터넷 기반 시민들의 여론분출 여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 독점, 시민운동의 인적자원 재생산 기반 약화 등이 기존 시민사회에의 시민관심과 활동이 약화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앙이 산업 및 소비경제사회 뿐 아니라 시민들을 만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시민사회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시민사회 및 시민운동의 현주소와 시민운동 당사자들이 객관적, 주관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되돌아보며, 향후 공익적 시민사회활동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자리매김하고 또한 이 활동을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원되어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I. 경기도 및 시군 시민사회 현황

#### 1. 경기도 및 시군 비영리 민간단체의 현황

본 조사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자체연구로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기준으로 31개 시군별 시민단체활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진행되었다. 자체 수집된 데이터 2,407개 단체에 대한 현재 단체활동유무 주요활동영역 단체유형 및 의사결정구조, 상근자 유무 등 기본현황(회원등록수, 상시적 활동회원수, 총활동가수)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방법은 전화설문과 방문조사 및 인터넷 설문을 통해 실시되었다. 자체수집데이터 1,091개중 최종분석에 사용된 총단체수는 792개 단체였으며, 기초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2. 분석결과

### 1) 총 792개단체 중 31개 시군별 응답비율

<표1-1>시·군 응답률

지역명	빈도(n)	유효(%)	지역명	빈도(n)	유효(%)
평택	18	2.3	용인	19	2.4
안양	18	2.3	연천	17	2.1
군포	37	4.7	양평	12	1.5
안성	22	2.8	동두천	8	1.0
의정부	31	3.9	가평	2	.3
수원	113	14.3	고양	48	6.1
안산	38	4.8	화성	25	3.2
성남	27	3.4	구리	29	3.7
광명	22	2.8	하남	50	6.3
시흥	24	3.0	포천	17	2.1
부천	38	4.8	남양주	28	3.5
의왕	18	2.3	여주	27	3.4
오산	21	2.7	과천	17	2.1
광주	14	1.8	이천	21	2.7
파주	9	1.1	양주	10	1.3
김포	12	1.5	<b>합계</b>	<b>792</b>	<b>100.0</b>

### 2) 비영리민간단체 운영형태

비영리민간단체 운영형태와 관련한 기초분석결과는 다음<<표2-1>>와 같다. 단체 운영형태가 비영리민간단체로 운영되는 곳이 응답 단체 중 7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비영리법인 형태가 20%로 조사되었다.

<표2-1>운영형태

운영형태	빈도(n)	유효 퍼센트(%)
비영리법인	162	20.5
비영리민간단체	553	70.0
임의단체	39	4.9
법인+단체	28	3.5
마을기업	8	1.0
<b>합계</b>	<b>790</b>	<b>100.0</b>

### 3) 비영리민간단체 주요활동영역

조사된 비영리단체 주요활동영역의 결과는 다음 <표3-1>과 같다. 총 792개 단체 중 주요 활동영역을 살펴보면 '자원봉사'단체가 141개 단체(1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환경, 에너지, 도시재생' 관련 단체 83개단체(11%), 그리고 '문화, 예술복지' 81개 단체(10%) 순으로 나타났다.

<표3-1> 조사단체의 주요활동영역

번호	주요활동영역	빈도(n)	유효퍼센트(%)
1	환경, 에너지, 도시재생	83	10.5
2	인권	8	1.0
3	평화, 통일	23	2.9
4	여성	34	4.3
5	권력감시	3	.4
6	정치,경제	16	2.0
7	교육,연구	71	9.0
8	문화, 예술, 체육	81	10.2
9	복지	30	3.8
10	아동, 청소년, 청년	63	8.0
11	소비자권리	9	1.1
12	가정	5	.6
13	노동	8	1.0
14	외국인	26	3.3
15	국제연대	1	.1
16	노인	16	2.0
17	장애인	77	9.7
18	자원봉사	141	17.8
19	지역, 주민참여	37	4.7
20	동물보호	8	1.0
21	농업, 먹거리	16	2.0
22	기타	36	4.5
<b>합계</b>		<b>792</b>	<b>100.0</b>

### 4) 비영리민간단체 의사결정구조(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수

총 응답 단체 중에 2개 이상의 의사 결정구조를 갖고 있는 단체는 총 748개 단체 중 390개 단체가 전체 5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의사 결정구조가 1개인 단체가 235개 단체로(31.4%)였으며, 의사 결정구조에서 총회, 운영위원회, 이사회 구조를 모두 갖추고 있는 단체는 123개 단체(16.4%)로 조사되었다. (\*추가분석에서 기관별 총회, 운영위원회, 이사회 유무 중복응답 조사에서는 총 792개 단체 중 총회의 의사 결정구조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71.7%였고, 법인 및 비법인 모두 해당될 수 있는 운영위원회 구조를 갖고 있는 곳은 58.6%로, 이사회의 구성율은 44.2%로 나타남)

<표4-1> 총 의사결정구조 수

	빈도(n)	유효 퍼센트(%)
1개 구조	235	31.4
2개 구조	390	52.1
3개 구조	123	16.4
<b>합계</b>	<b>748</b>	<b>100.0</b>

### 5) 비영리민간단체 상근자 유무

비영리단체 상근자 유무와 관련한 조사결과는 <표5-1>과 같다. 총 792개 단체 중 상근자가 있는 경우는 70%였으며 상근자가 없다고 응답한 단체도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5-1> 상근자 유무

상근자 유무	빈도(n)	유효 퍼센트(%)
있다	554	69.9
없다	238	30.1
<b>합계</b>	<b>792</b>	<b>100.0</b>

본 조사는 기존 경기도 내 전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기초실태 조사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처음 진행한 조사로서의 의미는 분명하다. 다만 지역별 편차와 활동가들의 일정 체크 등의 사전 소통해야 할 일들이 생각보다 원활하지 못해 정확한 자료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조사 과정에서 보완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해진 만큼 이후 추가 연구를 통한 보완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 2. 경기도 내 시·군별 시민사회 연대활동 현황

내 용	해당 지역	비율
연대체 유 / 정기회의등 활성화	- 고양, 광명, 광주, 군포,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용인, 파주, 양평 (14개)	45.2%
연대체 무 / 비정기회의 연대활동 활성화	- 구리, 남양주, 안성, 여주, 연천, 의정부, 하남, 화성, 평택 (9개)	29.0%
연대체 무 / 연대활동 비 활성화	- 과천, 의왕, 포천, 가평, 오산 (4개)	12.9%
연대체 무 / 연대활동 무	- 동두천, 이천, 가평, 양주 (4개)	12.9%

## II. 협치 및 시민운동(공익활동) 지원 관련 현황

### 1. 시·군 민관 협치 제도 및 실행 현황

연 번	기관명	1. 추진체계				2. 제도				3. 교육 2020 교육 계획	4. 협치기본 계획	
		(민관) 협치 위원회	행정 전담 부서	추진 지원 조직*	협치 지원관 운영	협치 조례	협치 사업	온라인 플랫폼	공론장 운영		기본계획	실행계획
1	수원시	○	○	X	X	○	○	○	○	○	X	X
2	고양시	X	○	X	X	X	X	X	X	○	X	X
3	용인시	○	○	X	○	○	○	X	○	○	X	X
4	성남시	X	○	X	X	X	○	X	○	○	X	X
5	안산시	○	○	X	○	○	○	○	X	○	○	○
6	평택시	○	○	○	○	○	○	X	X	○	X	○
7	파주시	X	X	X	X	○	X	X	X	X	X	X
8	의정부시	X	○	X	X	○	X	X	X	○	X	X
9	광명시	○	○	○	○	○	○	○	○	○	○	X
10	군포시	○	○	X	X	○	○	X	○	○	X	X
11	양평군	○	○	X	X	○	○	X	○	○	○	○

<경기도 소통협치국 자료>

\* 추진지원조직 : 협치추진단 또는 사무국

\*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 협치초기추진단계

\* 의정부시협치조례(제정. '20. 7.20.) 파주시협치조례(제정. '20. 2.14.)

## 2. 공익활동 지원 관련 진행 현황

내 용	해당 지역
조례제정 및 센터설립	- 군포
조례제정 유	- 구리, 안성 (2개)
조례제정 무 / 기반마련(모임구성)	- 연천, 안산, 과천, 광명, 김포, 성남, 양평, 포천, 평택, 하남, 용인, 안양, 의왕, 여주 (14개)
모임구성 무	- 가평, 고양, 광주, 남양주, 동두천, 부천, 수원, 시흥, 화성, 의정부, 오산, 이천, 양주, 파주 (14개)

### 2.1. 31개 시·군 지역간담회 결과 요약

공통제안사항 : 활동가 인건비지원, 아카이빙플랫폼(정보공유), 청년활동가 활성화, 회계 및 행정교육, 전문법률자문단, 비대면 활동방안(온라인교육 등)					
연 번	지 역	참여 단체	제안사항	지역간담회 효과	이후 진행사항
1	고양	10	· 회계부분 지원요청 · 지역공익활동의 한계를 느낄 때 광역센터에서지지 해주기를 요청		
2	과천	10	·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해서는 상근활동가 필요 (삶과 활동의 연결) · 회계교육, 센터전담 활동가 배치	· 이번 간담회가 네트워크 (연대체) 구성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음	· 간담회 이후 과천 활동가 네트워크 구성 하여 시·군 공익활동 촉진 장려사업 추진 지역실태조사 및 지역 활동가 발굴 등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으며, 이후 조례제정을 고려중임

공통제안사항 : 활동가 인건비지원, 아카이빙플랫폼(정보공유), 청년활동가 활성화, 회계 및 행정교육, 전문법률자문단, 비대면 활동방안(온라인교육 등)

연 번	지 역	참여 단체	제안사항	지역간담회 효과	이후 진행사항
3	광명	10	· 활동가의 심 프로그램 지원 · 지역정책 연구사업 지원 · 학계 등 전문가그룹자문단연계 지원	· 이 일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림을 그려야만 할 수 있으니 이번 간담회가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센터 필요 여부부터 고민 필요 · 지금부터 공익 활동 활성화를 위한 논의 의장을 만들자는 움직임	· 시군공익활동 촉진장려사업 추진 및 조례 제정을 위한 모임을 구성하여 기반을 마련함.
4	광주	8	· 지역의 센터 설립이 시민단체들을 컨트롤 하는 또 하나의 조직이 아닌 지역 풀뿌리 운동이 기반이 되어 아래로 부터 시작하는 지속가능한 방식이었으면 함 · 광주 공익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의 중간역할기대 · 단체별 인력부족으로 사업전담 인력필요 · 민관협치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경기도와 광역센터의 중간역할 요청	·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되었다는 사실과 지역 센터설립에 필요한 내용과 방식에 대해알 수 있는 기회였음 · 이번 간담회가 광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기회로 삼자	
5	구리	5	·공간 인프라구축 ·인건비지원 ·주민자치센터의공익활동지원역할 필요	· 추후 새로운 단체 발굴하여 확대회의 진행 결의 · 기획회의를 정기적으로 추진	· 공익활동활성화 관련 조례개정 및 모임구성
6	군포	9	· 시·군 지원 예산 증액 필요 · 광역과 기초센터 역할 구분 필요 · 아동, 청소년 대상 등 공익활동에		· 군포시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립

공통제안사항 : 활동가 인건비지원, 아카이빙플랫폼(정보공유), 청년활동가 활성화, 회계 및 행정교육, 전문법률자문단, 비대면 활동방안(온라인교육 등)

연 번	지 역	참여 단체	제안사항	지역간담회 효과	이후 진행사항
				대한 교육 필요 · 기초센터 지원 업무에 초점 필요(행정, 예산, 교육 등) · 사람 중심의 사업 필요 (인건비 지원 관련)	
7	김포	11	· 지역센터 설립에 있어 광역센터의 중간지원 역할의 중요함과 적극적인 역할 강조 · 공모사업 진행 시 회계교육 필요 · 광역과 지자체 회계 기준 통일 필요함 해결을 위한 센터의 역할 기대	· 이번 간담회가 지역의 센터 설립을 촉진하고 공익활동이 한발 더 나아가는 좋은 기회였음 · 지속적으로 지역 상황 공유하면서 센터 설립을 위한 단기적, 장기적 계획 마련하자는 의견	· 시·군 공익 활동촉진장려 사업추진 공익활동 활성화 준비위 결성
8	남양주	12	· 공익활동의 지속성을 위한 재정 및 상근가 확보 필수 · 지역의 풀뿌리 조직의 활성화 위한 청년 활동가의 참여 필요 · 열악한 단체의 직접 지원시스템 마련	· 최초로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 · 이 계기로 연대 회의 구성 제안 하여 조례 준비 등 설립 통한 연대회의 출범 결의, 출범준비위 구성하여 임원 선출 및 정례화 위한 구체적 추진 계획 확정	
9	동두천	7	· 활동가들이 사업과 단체활동을 이끌어가므로 인건비 지급의 당연함과 중요함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분위기 조성 제안 · 청년활동가의 현실적인 임금 지원	· 지역 단체들이 최초로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	

공통제안사항 : 활동가 인건비지원, 아카이빙플랫폼(정보공유), 청년활동가 활성화, 회계 및 행정교육, 전문법률자문단, 비대면 활동방안(온라인교육 등)

연 번	지 역	참여 단체	제안사항	지역간담회 효과	이후 진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결 요청</li> <li>공모사업 등 모든 사업에 인건비 지원요청</li> <li>단체에 맞는 회계 기준 제안과 지원 필요</li> </ul>		
10	부천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부담 비율과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한 인건비 지원 불가 하니 법적 근거 마련하여 인건비 지원될 수 있기를 요청함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 법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li> <li>공익활동아카이빙지원 필요</li> <li>활동가들의 견고한 결집을 위한 리더십 교육</li> <li>회계 및 행정 업무 등 전문적인 교육 및 회계프로그램 지원요청</li> <li>코로나와 같은 상황에 비대면 활동방안 마련으로 홍보 등 IT분야 취약한 부분을 기술적, 전문적 영역에서 습득의 기회 부여</li> <li>기부단체 회계규정이 매우 엄격하여 행정 업무 어려움, 서류처리 절차문의 시 행정부 등 기관마다 답변이 모두 다름, 이런 어려움 센터에서 매뉴얼 만들어주기를 요청</li> <li>각 지역의 단체 활동 진단을 통해 정말 필요한 것,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연구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조직들이 참여하게 되어 지금부터라도 정기모임을 갖고 공론화로 센터 설립의 시발점으로 삼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상시적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 하지만 그 외 민관 거버넌스 및 공익 활동 활성화에 대해서는 논의가 어려운 상태임</li> </ul>
11	성남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1개 시·군 단체들 네트워크 구축</li> <li>서울이나 타 지자체의 경우 인건비 지원 있고, 경기도가 사례를 만들고 있지만 확대가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로 그동안 못했던 회의를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함께 진행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익센터 관련 연구용역 추진 예정</li> </ul>
12	수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적인 회계와 행정 교육 필요</li> <li>청년활동가들을 위한 제도나 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원지역 공익 활동지원센터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협 상시 사안에 대해</li> </ul>

공통제안사항 : 활동가 인건비지원, 아카이빙플랫폼(정보공유), 청년활동가 활성화, 회계 및 행정교육, 전문법률자문단, 비대면 활동방안(온라인교육 등)

연 번	지 역	참여 단체	제안사항	지역간담회 효과	이후 진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련으로 지속성 필요</li> <li>수원지역 단체들의 정보사이트나 프로그램 구축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한 논의를 더 이상 늦추지 말자</li> <li>수원공익활동 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다시 고민 시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논의하지만 그 외 민관 거버넌스 및 공익활동지원 센터에 대해서는 논의가 어려움</li> </ul>
13	시흥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 공모사업에 인건비 지원은 최초인 듯하고, 인건비 지원의 제도화 기반마련 필요</li> <li>청소년 활동 지원에 대한 타 지역 사례 포함한 연구용역 및 사례집 발간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상황 공유하는 자리였고, 향후 더 많은 소통으로 함께 고민하는 기회로 삼겠음</li> </ul>	
	시흥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흥의 두 단체들에게 똑같이 연락 및 중재 역할 요청, 강사협동조합도 공익활동의 확대된 영역으로 봐주기를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연대체와의 원활한 소통이 어려운 상황 공유</li> </ul>	
14	안산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 모든 단체들의 정보를 한 곳에서 취득할 수 있는 아카이빙 필요</li> <li>시민사회에서도 정책 공론화 과정 돕거나 확산방식 정책플랫폼 마련</li> <li>공동 활동 행사 추진 시 지역 유치형 제안</li> <li>단체사업과 조직의 지속가능성 진단의 지표 개발 제안</li> <li>활동가의 인건비, 회계프로그램, 교육 지원</li> <li>청년일자리 사업이 경기도와 매칭되는 중간역할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시민 사회에서 공익 활동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기회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군공익활동 촉진장려사업을 통해 타 지역 사례 공유 및 활성화 방안 간담회 추진</li> </ul>
15	안성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가 컨설팅 운영</li> <li>시민단체 리스트 조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보제공</li> <li>비영리민간단체의 명확한 범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익활동지원 센터 설립 논의의 불씨를 지피는 계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재생, 공동체, 사회적 경제 등 시민활동 통합</li> </ul>

공통제안사항 : 활동가 인건비지원, 아카이빙플랫폼(정보공유), 청년활동가 활성화, 회계 및 행정교육, 전문법률자문단, 비대면 활동방안(온라인교육 등)

연 번	지 역	참여 단체	제안사항	지역간담회 효과	이후 진행사항
			· 사람을 지원하는 방식 필요 · 청년활동가의 공익활동촉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 필요 · 기존활동가 재정적 지원 및 신진활동가 발굴 필요		지원센터로 설립준비
16	안양	10	· 도민들의 편리한 후원을 돕는 시민사회단체 맵핑 작업 · 시민사회단체온라인 플랫폼 운영 · 시민사회단체아카이브 운영 필요	·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사항 간담회를 통해 확장된 협의로 추진하는 계기 마련	· 시군공익활동 촉진장려사업 참여 · 공익활동 활성화 간담회 추진
17	양평	9	· 시민사회의 전문성 확보, 활동영역 확대의 기반 조성의 센터 역할 기대 · 시민사회단체의 지속 가능한 조직을 위한 상근자 확보 · 지역 풀뿌리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 전문적인 회계프로그램 서비스 필요	· 이번 간담회에서 필요한 내용 자문 받아 군수와 면담 추진 예정 · 열악한 상황 속 공공의 이익 고민하는 사람들 경기도 곳곳에 묵묵히 활동하고 있다는 희망 확인한 뜻깊은 자리	· 조례제정 법안 검토 중이며 공익 활동 활성화 위한 활동 추진
18	여주	12	· 회계정산서류 간소화 · 봉사 활동에 소요 되는 자부담의 비용 해결에 대한 문제 · 지속적인 인력지원 시스템 요청 · 비판적 활동도 적극 지원 필요	· 지역 단체들이 사안에 따라 연대하였으나 지역간담회 이후 여주 착한 이웃으로 연대체에 대한 의미 부여 및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됨	· 여주시 착한이웃으로 연대체 구성 지역의 필요한 사업을 추진
19	연천	9	· 지역의 여건과 여러 상황 들을 풀기 위해 같이 고민해 주고	· 연천지역의 공익활동	· 시군공익활동 촉진장려사업

공통제안사항 : 활동가 인건비지원, 아카이빙플랫폼(정보공유), 청년활동가 활성화, 회계 및 행정교육, 전문법률자문단, 비대면 활동방안(온라인교육 등)

연 번	지 역	참여 단체	제안사항	지역간담회 효과	이후 진행사항
				단체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그 자체로도 큰 의미	추진
			지원해 주기를 바램 · 각 단체의 상근활동가가 부족한 실정으로 공모사업 등 정산 및 결과보고에 대한 서류 간소화 요청	· 이번 간담회가 향후에 연천지역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좋은 토대의 계기 마련 · 차기회의 일정을 잡고, 이후 함께 참여하지 못한 단체들 독려하여 추후 모임을 확대하려는 움직임	· 연천시민사회 단체연대회의로 네트워크 구성 지역 내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단체 발굴
20	오산	9	· 전문회계사 등 전문그룹이 구성되어 단체에서 지원 요청 시 바로 지원하는 시스템 필요 · 행정업무간소화방안 마련 요청 · 행정부서 간 회계 및 행정 서류 통일화 및 간소화 · 홍보(카드뉴스, 웹홍보, 소식지 발행)의 취약점 보완 위한 매뉴얼이나 기본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활동가 저장소 구축 필요	· 오산 센터 설립에 대해 지역 활동가들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장을 여는 계기가 되어 지역 공익활동에 대한 희망 메시지 남김	
21	용인	16	· 연대 활동 시 실무자 지원이 시민사회의 활성화 요소 · 비슷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활동년 차별 활동가들의 모임 지원 · 자기계발 욕구를 위한 개인	· 지원사업과 공간이 광역센터 한 곳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 공익활동 활성화 조례제정을 위한 시장 간담회 등 활성화 방안 공론화 과정

공통제안사항 : 활동가 인건비지원, 아카이빙플랫폼(정보공유), 청년활동가 활성화, 회계 및 행정교육, 전문법률자문단, 비대면 활동방안(온라인교육 등)

연 번	지 역	참여 단체	제안사항	지역간담회 효과	이후 진행사항
			연구나 팀 연구 공모사업의 다양한 주제로 지역의 필요한 연구지원 필요 · 단체발굴, 활동내용을 만들어내고 네트워크 연결 역할	스며 들어야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 모두 공감 · 간담회 말미에 센터 설립추진을 위한 준비위원회(TF팀)바로 구성하여 추후 지속적으로 활동예정	추진
22	의왕	9	·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추후 공익활동 활성화 위한 사업수행 시 경기도센터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그동안 여러 시도 있었던 지역,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성 시동의 기회로 삼아 결실의 의지 피력 · 센터 건립과 지역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TF팀 조직하여 이후 활동 논의 시도 의견 동의	
23	의정부	8	· 공유공간 필요 · 청년활동가 육성대책	· 연대체 구성 및 공익활동 활성화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	·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토론회 추진
24	파주	6	· 각 시·군 지역의 준비와 사정에 따라 처음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 광역센터가 방향을 잘 잡아야 하고, 지역 간담회의 지속적인 진행의 필요성과 중요성	·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진행 하지 못했던 시민사회 간담회도	· 새롭게 정비된 연대체의 안정화를 위해 정기 모임 등 추진

공통제안사항 : 활동가 인건비지원, 아카이빙플랫폼(정보공유), 청년활동가 활성화, 회계 및 행정교육, 전문법률자문단, 비대면 활동방안(온라인교육 등)

연 번	지 역	참여 단체	제안사항	지역간담회 효과	이후 진행사항
			강조 · 추후 지역 단체에 시급한 지원과 중장기적인 과제와 목표를 지역과 함께 정리 필요 · 파주의 당장 시급한 사항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회계교육 등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교육 마련 요청	공익활동지원이라는 계기와 목표로 재진행의 희망 보임 · 이번 간담회로 중간지원조직 개념이 정리되어 의미 있었음 · 파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지역에서 먼저 스스로 만들어갈 예정, 지역의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겠음	
25	평택	1	· 경기도 31개 시·군 각 지역 마다 만들어질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초기 설립 기반을 지원 기대	· 첫 간담회 지역으로 협치 위원회와 실질적인 방안을 협의하는 기회임	· 조례제정 마련
26	포천	5	·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와 정보공유를 위한 온·오프라인 공유 공간 필요 · 각 지역별 상황에 맞는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센터의 중간역할 필요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필요성 알게 된 기회 · 이 계기로 지속적으로 마을활동가와 주민자치와도 공동포럼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뜻 모음	· 시군공익활동 촉진장려사업 참여 · 공익활동 활성화 간담회 추진
27	하남	13	· 공간, 회계, 인력지원,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제안 · 경기도 31개 시·군 시민사회 담당 부서 파악 요청	· 네트워크 구축과 조례제정 등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 결의 · 조직확대를 위한	· 시·군공익활동 촉진 장려사업 참여 · 공익활동 활성화 간담회 추진

공통제안사항 : 활동가 인건비지원, 아카이빙플랫폼(정보공유), 청년활동가 활성화, 회계 및 행정교육, 전문법률자문단, 비대면 활동방안(온라인교육 등)

연 번	지 역	참 여 단체	제안사항	지역간담회 효과	이후 진행사항
				후속 모임 결정	
28	화성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근 활동가=근로자의 직업 개념으로 상근자 처우 개선 요청</li> <li>· 건강한 시민사회단체는 건강한 시민사회와 직결되는 문제로 풀뿌리단체 지원</li> <li>· 중요영역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식, 봉사 수준이 아닌 직업의 개념으로 인정되어 시민사회단체가 안정화 단계로 도달하기까지의 장벽과 어려움 등 해결 과정의 지원과 활동가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일꾼 역할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회의 시 조례 제정 등 세부 사항 논의하기로 함</li> </ul>	
29	양주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공익활동 사례, 제안사항 등을 센터에서 취합해서 반영한 사업을 펼쳤으면 함.</li> <li>·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피드백이나 컨설팅 지원을 요청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단체들이 처음 한자리 모였고, 바로 네트워크를 형성 하는 계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공익활동 촉진장려사업 참여</li> <li>· 공익활동 활성화 간담회 추진</li> </ul>

### III.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당사자 평가 / FGI

2020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공익활동활성화 연구팀을 구성하여, 경기도 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기본실태조사와 경기도내 8개지역 시민사회 5년 이상 경력의 중견 활동가들을 모시고 8개 그룹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래의 '시민사회활동 당사자 평가'와 '협치 및 공익활동 지원 평가'는 조사결과를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 1. 조사개괄

FGI 조사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째, 개별 인터뷰이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시민사회활동의 현황과 과제 둘째, 개별 인터뷰이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 활동의 현황, 문제, 과제 셋째, 지역사회 민관 협치에 대한 현황 및 문제의식 그리고 넷째로는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위해 지자체의 지원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다섯째, 지난 5월에 제정된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대통령령)과 관련하여 향후 경기도 공익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흐름과 전망)과 이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 등이 그것이다.

FGI 대상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FGI 주요 질문 사항

1. 귀하가 속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 현황과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귀하가 속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 활동 현황, 문제점, 과제는 무엇입니까?
3. 귀하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연대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4. 귀하가 속한 지역의 지자체와 시민사회 등의 민관협치, 민관협력활동의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5. 귀하가 속한 지역에서 시민 및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위해 지자체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귀하가 지자체 지원을 평가한다면?
6. 정부는 올해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기본계획에 몇 가지 지원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지원방안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2) 참가자 현황 및 일정

FGI를 실시한 지역은 총 8개 그룹, 9개 지역이다. 의정부, 안양, 하남, 김포, 과천, 광명, 안산 그리고 포천과 연천 등으로 각 지역 마다 3~5명이 참여했다. 경기북부 3곳, 경기남부 4곳, 경기동부 1곳, 경기서부 1곳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1주일 정도 압축해서 진행했으며, 공익활동발전연구팀 위원들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시간은 1시간30분~2시간 정도로 질문의 양이 적은 대신, 인터뷰이들의 깊은 생각을 들어보려 했다.

<표> FGI 일정과 참여자 등 개괄

지역	참가인원	인터뷰어	일정/장소
의정부	4인	이정아	10월 26일 /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안양	4인	박은호	10월 26일 /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하남	4인	박은호	10월 27일 / 하남YMCA
김포	4인	이정아	10월 27일 / 김포경실련
과천	5인	박은호	10월 27일 / 과천 개인주거지
광명	4인	이영순	11월 2일 / 광명경실련
안산	3인	이영순	11월 2일 / 안산YWCA
포천/연천	3인	김현	11월 3일 / 포천나눔의집돌봄센터

## 2. 조사결과

### 2.1.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 현황 및 과제

#### 1) 지역마다 시민사회 조건은 매우 다르다

지역의 인구 규모와 구성, 정치지형의 변화, 농촌과 도시, 지역성향(보수성과 진보성), 시민사회단체 구성과 활성화 정도 등에 따라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은 모두 상이 했다. 포천, 연천과 같은 농촌 중심 지역은 보수성이 강하여 진보성을 띤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녹록치 않았으며, 하남이나 광명과 같은 신도시 중심의 시민사회활동은 상대적으로 활성화 정도가 높았다. 안산이나 과천처럼 도시의 규모는 달라도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전성기를 경험한 지역은 새로운 활성화 전략을 고민 중이며, 안양, 의정부, 김포 등도 지역사회 정치지형이나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정도에 따라 현재의 활동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인력, 재정, 공간, 재생산 등 시민사회단체 상황은 대체로 열악하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조직은 언제나 재정력, 인력 등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정부 정책을 감시하거나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 문제는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 되어 온 과제이기도 한데, 사회가 분화되고 경제 불평등이 심화 되면서 비영리조직의 설 자리가 더 좁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97년 DJ정부 이후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 확장된 것은 사실이나, 법과 제도는 언제나 빠른 사회변화에 호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

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로 유입되는 재정과 인력은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인터뷰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연대 활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거나, 사람이 없어 이슈에 대응하지 못한다거나, 한 사람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과거에 활동했던 사람들은 꾸준히 현장에서 볼 수 있으나, 새로운 사람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도 받는다고 인터뷰이들은 말한다.

#### 3) 시민사회 활성화 정도에 있어서 정치지형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어느 정당이 행정부 또는 지방의회를 구성하느냐가 시민사회단체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이는 아주 오래된 상수다. 시민사회단체에 우호적이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도 관건이지만, 정파를 떠나서 행정부나 지방의회가 시민사회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시민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예컨대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 때 만들어졌던 3대 관변단체 특별 지원법에 의해 활동하는 관변단체가 지역 시민사회의 주축이라고 믿는 정치집단이 정권을 잡는다면, 90년대 이후 환경, 문화, 인권, 젠더, 풀뿌리 등의 다양한 NGO 활동은 주변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이러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농촌 지역 혹은 도농복합지역에서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정부의 지원으로부터 소외 받는 경향도 존재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회변화에 따라 관변단체 색깔이나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행정부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측면이 있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 이를 테면 환경이나 문화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거부감 없이 중앙정부나 상위기관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크다.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룰과 원칙이 제도적으로 공정하게 만들어진다면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 4)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다

코로나19가 인류를 기습한 지 1년여가 다 돼간다. 2020년 초, WHO가 전염병 대창궐을 의미하는 팬데믹을 선언한 후, 시민들의 일상생활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오프에서 모이고 떠들고 꿈꿔왔던 시민사회 개개인들이 이제는 흩어지고 온라인으로 들어가면서 소통과 회동의 방식이 짧은 시간에 변화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 불편하지만 참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나와 내 이웃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대중교육, 강의, 캠페인 등 집합해야 할 수 있는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 혹은 대면 없는 온라인 형태로 진행됨으로써 시민사회 활력이 주춤하는 형상이다. 코로나19 이후의 담론에 대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고민이 크다.

### 2.2. 연대활동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과제와 지원방안

### 1) 일상적인 연대활동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

환경 이슈, 부동산 이슈, 개발 이슈 등 지역의 특별한 현안이 생기면 사람들은 모이게 되고, 시민사회단체가 관심을 가져왔던 주제라면 단체들의 연대는 수월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안이 없거나 사라지면 일상의 연대 활동은 지속성이 떨어진다. 개별 단체의 업무가 연대 활동 이외에도 과중한 상태고, 큰 단체 위주로 간사를 맡다 보면 그 단체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 재정난과 인력난이라는 이중고가 겹치면서 모이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지역도 생겨난다. 그러다 보니 선뜻 서로에게 연대를 요청하는 것을 자제하기도 한다. 서로 바쁘고 조건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일상적인 연대체는 관성적인 활동이 이어지면서 연대체의 목적의식이 모호해지는 경우도 많다. 동시에 여러 이슈가 터지는 지역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짐으로써 연대 활동의 의미가 희석되기도 한다. 공간의 문제도 적지 않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거나 없어지면서 대화하고 수다 떨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아쉽다.

### 2)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공간을 통해 연대의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 중에 하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제공하는 일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센터는 시민들의 활동 현장에 존재하므로 공유공간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군포에서 준비 중인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간 설계를 살펴보면, 개인이나 단체가 활용하는 공유공간은 물론이고, 공유사무함, 모임 공간, 다목적 홀 등 공간을 디테일하게 설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은 재정과 인력에 허덕이는 시민사회단체에게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또한 센터는 공익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연대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를 개별 조직이 부담하기보다 센터가 보유한 장비를 공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다.

### 3)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필요 하다

나누고 함께 쓰는 시대가 되었다. 개별 단체들의 능력 문제를 떠나, 독자적인 재정이거나 공간 확보에 집중한다는 것은 매우 소모적이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도나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이 제정되고 있는 흐름을 감안한다면, 건강한 시민사회 육성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은 불가피하다. 시민사회단체가 각자도생이라는 환경으로부터 부담감을 덜 수 있다. 그러나 3개 관변단체 지원법과 같은 특별법이 없는 한, 정부가 매우 다기한 시민사회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다 각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존 지원사업처럼 행정이 지원하는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절차

가 까다롭지 않게.

## 2.3. 민관협치 현황 그리고 개선해야 할 과제

### 1) 여전히 시민사회는 행정부의 파트너가 아니다

거버넌스, 협치라는 개념은 꽤 오래되었지만, 현장에서 구현되는 과정은 여전히 더디다. 행정은 지시하고 시민은 따라야 하는 구시대의 마인드로는 변화된 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 서로 협력하고 협의해야 하는 관계라는 인식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고정관념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런 경험을 쌓아가는 초기 시험무대다. 다양한 행위자가 협력하고 협의하는 협치의 기본 정신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런 기본 인식의 미비가 현재 협치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 2) 협치가 대세인 것은 분명하다. 이제 시작이다

협치의 본질이 제대로 드러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은 지역이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행위자들이 지역을 토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직접적인 소통과 협력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참여한 많은 후보자들은 ‘협치’를 통해 행정을 수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러한 흐름은 오래됐고, 심지어 서울 등 몇몇 지역은 행정 시스템 안에 협치 모델을 적용하기도 했다. 나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지역도 있다. 협치가 대세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앞서서 서술했듯, 협치를 추진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갭은 매우 크다. 개념에서부터 적용 사례까지 간극을 좁히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시작단계다.

### 3) 협치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행정부도 시민사회도 역량을 키워야 한다

당연한 말이다. 협치는 알아서 굴러가는 것이 아니다. 소통하고 협의하고 합의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 그래서 기술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것이 그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역량일 수 있다. 기술과 역량은 누가 갖춰야 하는가? 협치의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개별 행위 당사자들의 역량이 모여 그 시민사회와 행정부의 역량으로 등치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협치 기구를 구성하기에 앞서 다양한 교육과 직·간접 경험이 필요하다. 아니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 2.4. 지자체의 지원 현황 그리고 평가

### 아무리 생각해도 제대로 된 공익활동 지원시스템은 없다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거의 없다. 사업을 공모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꽤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지만, 법 제도가 강제하는 것 이외에 자체적인 전략을 세워 공익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지역은 찾아보기 힘들다. 공익활동의 주체는 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에게 대한 지원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그 모델을 만드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인터뷰에 참여한 지역 활동가들은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기대가 크다.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선도적으로 설립한 지역이 어떻게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 2.5. 구체적인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지원방안

### 1) 활동가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가능성을 떠나 깊게 고민할 때다

문제는 시민들이 공익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의 뒷받침이다. 공익활동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생업으로 생각하며 참여하는 이들도 많다. 활동가들의 처지가 다양하다면 일률적인 사업지원 외에도 다채로운 제도적 지원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인건비가 문제다. 기본소득이라는 답론이 우리 사회에 서서히 스며드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기적인 비빌 언덕 없이는 공익활동을 포함한 의미 있는 사회적 활동이 자발적으로 벌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허상일 수 있다. 물론 활동가에게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거나 활동가 인건비를 법제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모아볼 필요가 있다.

### 2) 교육, 심, 견학 등 활동가들이 역량강화·재충전 기회가 필요하다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제정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간접적 지원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에 강구되어온 정책이고, 많은 시민사회 활동가들에게 아이디어가 풍부하다. 가령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 지원, 무조건 쉬게 하는 프로그램 지원, 육아·보육 등등 활동가들 몇 명 모아 놓고 자문을 구하면 매우 다양한 방안이 나올 수 있다. 공익활동이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이라면,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그들에게 역량 강화와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3) 언택트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고, 시민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개인의 삶의 태도와 패턴까지 바꾸고 있다. 문제는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 창궐을 무시할 수 없다. 2000년대 이

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까지, 5-7년 단위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인류를 위협했다.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도 언택트 시대에 걸 맞는 지원방안이 나와야 한다.

### 4)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행정의 지원금은 모두 세금이고, 용도는 정해진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증빙자료도 철저히 구비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제안을 해왔다. 불필요한 절차, 중복의 절차를 피하자는 뜻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지원금이라면 인건비 반영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IV. 시민사회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제

### 1. 코로나19로 드러난 시민운동의 과제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겪으면서, 시민사회진영도 무기력감과 운영의 고충을 어느 집단 못지 않게 체감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활동가들이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약화는 코로나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지금의 어려움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한다. 시민사회의 재도약과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 처방과 노력이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하고 허점이 많은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고용 유연화와 비정상적 자영업 비중 등이 비대면 시대 직격탄을 맞는 취약계층이 많음을 드러냈으며, 사회적 불평등과 인권, 민주주의, 기후위기의 심각성 등을 시민운동의 주요과제가 되어야 함을 인식시켜주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의 지속적 연대 활동의 과제를 논의하는 흐름 또한 형성되고 있다.

과거처럼 운동선각자가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모으고, 후원자를 모아 운영하던 시민단체활동, 시민단체 연대 활동이 지금은 매우 어렵다. 시민사회의 공익적 변혁 활동이 가능하려면, 이제 제도적,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변화시켜야 한다.

### 2.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시행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자고 앞서 말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시민사회 당사자들의 적극적 고민과 합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기, 실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 1) 시민사회활동 인적자원 재생산을 위한 지원
  - 청년, 시니어 활동가의 시민사회운동 직업활동가로의 진입 지원
- 2) 지역의 과제 대응단위인 시민사회 연대활동에 대한 물적, 인적 지원
- 3) 시민사회활동에 대한 기부금 및 모금 활성화 지원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불평등 해소 - 장기적 방안
  - 비영리 공익단체의 모금에 대한 지자체 매칭 지원
- 4) 기초단위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및 체계적 공익활동 지원 확대

## 지정토론1

**김강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원



경기도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정책토론회 토론회  
**‘경기도 공익활동 확산을 위한 조건에 대한 기대’**

이정아(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윤종화 위원장, 박은호 위원께서 진단하고 있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전략으로서 시민사회진영 활성화 방안은 시의적절함.

사회의 공익적 자본을 형성하고 확장해 나가야 하는 이유, 두 발제자께서 공히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더욱 긴급한 환경에 놓여있음은 주지의 사실임.

1999년,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보장과 민간단체로의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2000년 시행, 이후 부문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법 조항이 늘어나며 일정 부분 공익활동 지원범위가 확장해왔다 할 수 있음. 하지만 얼마나 적극적 조치를 담보하고 있는가에 이르면 여전히 포괄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입법의 수준 확보는 제자리걸음이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실효성 낮다는 평가는 일반적임. 두 발제에서 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보여온 태도에 공히 우려하고 있음이 읽히는 데서도 확인됨.

더욱이 시민사회를 적극적인 의미에서 협업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지역 삶의 가장 기초를 이루며 사회 의제를 드러내고 때로 해결해나가기 위한 주체로서 역할을 해 왔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간의 경험치는 제도개선과 함께 민관 거버넌스에 관한 질적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함을 의미함.

경기도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음은 이러한 비판적 평가에 대해 변화의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됨.

이를 기반으로 경기지역 시민사회현황파악을 위한 31개 시·군 비영리민간단체 실태조사를 진행한 점은 그동안 다양한 공익활동에 관한 지역 현황 파악이 단선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에 비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집적되어, 귀한 선형자료이자 지역 연대활동의 교차점을 발견해갈 수 있는 정보로서의 가치도 크다 할 것임.

박은호 위원께서 발제에 적시한 바와 같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내 성장지원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경기권 내 확인 가능한 단체가 792개임. 결코 적은 수가 아닐 것임. 주요 활동영역은 여성, 환경, 인권, 평화와 통일, 권력 감시, 정치경제, 교육, 문

화예술, 체육, 사회복지까지 광범위하며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세대별 접근과 노동, 국제연대, 장애인, 동물보호, 농업, 먹거리...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상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하지만 의제실현을 위한 주체, 또는 지지집단의 성격은 비영리법인20%, 비영리민간단체70%, 임의단체와 마을기업이 약6%, 여기에 법인과 단체 즉 일정 규모를 확보하고 있는 비율은3.5%에 불과함을 확인하게 됨. 이 지점에서 어떤 제도마련이 필요하며 민관 거버넌스가 어느 지점에서 일어나야 함을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짐.

여성 시민사회단체 포함 지역 대부분의 NGO 단체의 경우, 인적, 조직적, 재정 부족으로 인해 위에서 언급한 지역의 복합적 이슈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여기에 연대는 작동하는 성향에 따라 영역별, 분야별 차이가 존재하며 간극 또한 현실임. 독자 생존을 어떻게든 모색하거나 소멸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상황 역시 상당할 것임.

여기에 국가, 또는 지방정부에 포섭되어 행정운영 시계에 맞추기 위한 발전대상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지역 운동의 주체로서 각 분야별 역할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것 만만찮은 과제로 얹어져 있음.

윤종화 위원장께서 제기하고 있는 <제도가 변화되고 개선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시민사회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는다. 제도의 변화와 시민사회 활성화의 과제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사회문제 해결에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시민 주체성이 성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비중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게 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함.

발제된 1) 시민사회활동 인적자원 재생산을 위한 지원. 2) 지역의 과제 대응단위인 시민사회 연대 활동에 대한 물적, 인적 지원. 3) 시민사회활동에 대한 기부금 및 모금 활성화 지원. 4) 기초단위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및 체계적 공익활동 지원 확대 등 제시되고 있는 과제가 실질적인 추진성과를 만들어 내어 위와 같이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단초가 되길 기대하며 민관협업 과정에서 수행의 자율성 보장과 수평적 논의 구조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 경기도 공익활동 환경변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해야 할 것임.

### 지정토론3

#### 박완기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제도개선분과위원장

## 토 론 문

박완기(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제도개선분과위원장)

1. 경기도 시민사회에 대한 종합적 실태조사와 진단이 시도된 것은 매우 의미 있다. 2,407개 단체를 대상으로 시작해 최종분석에 사용된 792개 비영리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31개 시·군중 28개 시·군에 대한 순회간담회, 8개 권역으로 진행된 심층 인터뷰가 경기도의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한 현황과 단체들의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 비영리단체 등록 이후에는 활동 현황도 관리되지 않고 연락처도 업데이트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현황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및 공익활동연구팀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이러한 조사가 좀더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진행(전수 조사 등)되기를 바란다
2. 평화적인 촛불시위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듯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은 매우 성숙했고, 사회적경제·마을마들기·SNS를 통한 자발적 시민모임의 확대 등 시민사회는 다양화·확산되고 있으나, 전통적 의미의 시민단체 영향력·재정·재생산구조는 오히려 약화 되고 있는 듯하다.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통적 의미의 시민단체에 국한된 시각을 넓혀 공익활동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80년대말에서 90년대 후반기까지 시민단체가 우리사회의 공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고 대다수 시민들에게 인식되었는데 이제 시민사회도 진보·보수로 나누어져 인식되고 있다. 시민사회의 확장 and 통합이 필요하다. 시민단체에서 시민의 공익활동으로 시야를 넓히고 확장된 시민사회·공익활동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정책적·재정적 지원의 확대를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경기도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실태조사, 지역순회간담회,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지역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공익센터의 필요성을 확산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시민사회에 작은 희망을 던질 수 있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4. “아무리 생각해도 제대로 된 공익활동 지원시스템은 없다.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거의 없다. 자체적인 전략을 세워 공익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지역은 찾아보기 어렵다. 활동가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공익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의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시민사회의 범위를 시민의 공익활동으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제도적,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경기도 협치형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경기도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예산과 <경기도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지원>예산 각 10억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되고 2021년 예산책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5. “협치가 대세이며 협치의 본질이 제대로 드러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은 기초 지자체이다. 협치에도 기술이 필요하며 행정부도 시민사회도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협치를 추진하는 경기도 내 시·군이 12개로 나타나는 데 보다 확대되고 협치와 관련한 시민사회의 교육이 확산 되는 한편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와 시·군 협치위원회와의 네트워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시군에서 모범적인 민관협치 사례가 나타났으면 한다.
6. 지난 5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조치이며 이후 국회의 법제정으로 까지 연결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대통령령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7. 대통령령에서 <시·도에서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제정과 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권고>하고 있는바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인 수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 조건(2017년 2,215단체. 전국 12,309단체의 18%)과 2019년 수립된 <경기도 민관협치 기본계획>에서 이미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종합계획 수립>과 <시민사회조직 지원시스템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 지정토론4

한유경

경기도 민관협치과 협치기획팀장

#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토론회 토론문

한유경(경기도 민관협치과 협치기획팀장)

시민사회조직은 분절적으로 존재하는 시민을 공공선을 지향하여 조직화하는 플랫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단위에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하여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되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3년 국무총리훈령으로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다가, 2020.5.26.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대통령령,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 소관)을 제정하여 활성화 기반이 확대되었습니다.

내용은 발제문에 있어 생략하며, 주요 핵심은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장관급 정부위원 참여, 실무위원회 운영,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 등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사회발전기본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총리실에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03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2014년 폐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사업”으로 전환)한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사업을 공모로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이와는 별개로 각 개별법규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간자본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되어있는 사업들이 시민사회를 포함한 제3섹터 협력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기금, 환경보전기금, 여성진흥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각종 기금과 경기문화재단 등 道 출연기관의 각종 공모사업으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대통령령의 제정에 따라 매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정부 단위에서 이에 대한 논의에서 몇 가지 검토하여야 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1. 선언적 규정이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속력이 부족합니다.

제3조·제4조의 중앙단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제7조의 중앙단위 위원회 구성 이외에는 재량적 규정입니다. 시도 단위의 계획 수립이나 조례의 제정, 시도 위원회 설치에 지방정부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단위에서 유사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을 경우의 대안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수렴이라든지, 동참·협력을 구하는 행동 등 구체화된 흐름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중앙단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방정부에 대한 지침 또는 권고 형식으로 기준을 정하여 통보될 것이라 판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내용을 시도계획에 반영 요구할 수 있고(제5조제2항), 지방정부에 대한 일반적인 권고도 가능(제2조제2항)한 상황이므로, 중앙의 기본계획과 권고를 지방정부가 전폭 또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전혀 무관하게 갈 것인지를 어느 시점에는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2. 조례와 위원회, 기본계획의 중복에 대한 해소방안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를 보면, 대통령령과 거의 유사한 내용과 취지를 가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1.14. 제정되었고, 공익활동촉진위원회가 2019.12.10. 구성, 공익활동지원센터가 2020.3.2. 개소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공익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2019.6.5. 수립하였습니다. 일단 제도적으로는 완비되어 있는 상태이며, 실제적인 활성화 및 발전방안은 위원회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고민하여야 하는 단계입니다.

(경기도 조례와 대통령령 비교표 별첨)

그리고 약간 결이 다르나 시민사회를 매개로 도민의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는 제도로 경기도에서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주민참여 기본조례」 등이 있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민주시민교육 조례」,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등과도 접점을 찾을 수 있으며, 또다른 다양한 개별 조례에서도 산발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다양한 조례에서는 중장기 기본계획, 위원회 운영 등이 거의 공통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행·재정적 추진과제는 중복되어 나열되고 있어 서류상 계획 난립, 행정력 낭비와 시야의 협소화, 분야 간 장벽 초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 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사 위원회 통합, 중장기계획의 대위 수립 등이 추진되어 왔으나, 지속적인 한계를 노출하여 왔습니다.

중구난방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조례, 위원회, 기본계획의 대통합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고민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정부가 시민사회와 접하는 제3섹터 사업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서 재정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크게 위탁과 보조 두 가지로 대별 됩니다.

두 가지 사업방식의 본질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위탁은 수탁기관이 정부의 일을 대신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즉 업무 자체가 정부의 직무이고,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수탁자는 사실상의 행정공무원으로 보아(법적으로 ‘공무수탁사인’이라 합니다) 행정절차와 채용, 회계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처리에 소요 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감독 행정부서의 엄격한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설위탁과 사무위탁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공립사회복지시설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고, 후자는 보통 ‘~센터’라는 사무처리기구의 형식인데 공익활동지원센터나 공동체지원센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조는 민간(자연인, 단체, 법인 등)이 하는 활동 중 특히 공익성이 있어 촉진·확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전액일 경우도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 정액 또는 정률보조)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사업 자체가 민간의 일이므로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높으나(계약조건[‘교부조건’]에 따라 수위 결정), 방만한 행·재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지방재정법령 등으로 예산편성·지원에 제한을 걸고 있으며, 직접 적으로 법규에 지원이 적시 될 경우에 한해서 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묘하지만 차이가 있는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조례에 따라 위탁 형식이나, 대통령령에 따른 공익활동연구기관은 보조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차이가 나중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려우나, 일단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는 경기도 조례가, 자율성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더 낫다 하겠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세부적으로 구상할 때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 사전에 늘 고민하여야 합니다.

### 4. 시민사회 활성화 취지를 어디에 담을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1988년 6월 대항쟁 이후 복지, 환경, 일자리, 공동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민간협력사업이 만들어졌고 또한 분야별로 전문가, 활동가들이 배출되고 협력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시민사회가 활성화되는 조건이 성숙해졌다는 의미도 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통섭적 시각이 필요할 정도로 너무 세분화되어 벽이 생겼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새로운 영역을 과업화(실행과제?, 사업?)할 때, 기존의 영역과 병렬적인 개념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기존 영역에 포개어 넣는 메타적인 관점으로 갈지 생각해야 합니다. (기존 영역에는 늘 기득권이 존재합니다)

전자라면 새로운 단위사업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후자라면 기존사업의 목적·목표·절차 등을 리모델링 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 활성화 교육을 과제로 한다면, 새로운 사업을 만들 것인지, 기존의 민주시민교육, 협치교육, 공익센터 교육, 주민자치 교육, 공동체 교육 등을 개조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실제 논의에 들어가면 두 가지 모두 함께 논의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세부과제를 어떤 측면에서 설계할지를 미리 고민해놓는다면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5.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관협치(거버넌스) 영역의 확대는 행정에서 난제 해결의 어려움과 함께 시민사회의 성장이 그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기존의 틀이 있고 국정감사, 행정사무 감사, 정부 감사 등 다양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 선례를 벗어나는 행동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조금이라도 자유롭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민사회와 소통이 원활한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특히 행·재정적 감독의 범위를 넘어 시민단체의 독립성에 대하여 간여하는 모양새는 매우 회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공공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걸 넘어, 시민사회조직의 발전 그 자체를 논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공적 직무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늘 모호한 지점에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연유로 대통령령 역시 국무조정실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내리는 총리비서실의 특정 비서관이 소관하는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경기도는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법인에 위탁하여 공익활동지원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직무 역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제도화 할 지를 고민하는 것은 공적 영역이나, 독립성에 기초한 시민사회단체의 논의 그 자체는 일상적이어야 하고, 공익센터가 그 촉진자의 영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을 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사람과만나는 관계가 가장 어려운 것이라는 점입니다. 활성화란 지속적인 과정이며, 시민사회는 늘 변화와 새로운 물결을 보여주는 가변적인 영역이므로, 민·관 모두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별첨

## 대통령령 및 조례 비교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 ※ 조례 따라 시도계획 수립 가능 ※ 관계 행정기관장은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내용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추진과제 3.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구축·강화 방안 4.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 전문가 양성 지원 방안 5.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방안 6.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7.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시민사회 소통·협력과 공익활동 증진 지원 방안 8.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익활동 환경 조성 및 도민 참여의식 제고 2. 공익활동 주체의 발굴 및 양성 3. 공익활동 주체의 활동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연구조사 5.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공간의 마련과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7. 그 밖에 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위원회	35명 이내(민간위원 3/5) / 임기 2년 / 민간위원장 ※ 現 민간위원 26명 / 정부위원(장관급) 9명 ※ 조례 따라 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가능	15명 / 임기 2년 / 민간위원장 ※ 現 민간 12, 도의회 2, 행정부 1
위원회 심의사항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정비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3.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자율성·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에 관한 사항 4. 기부·나눔 확산 등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시민참여 확산에 관한 사항 6.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시민사회의 국제협력기반 강화 및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익활동 촉진과 관련하여 다수 부서가 관계된 사항의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도민의 공익활동 참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사회발전 및 공익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설기구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지원 연구기관	공익활동지원센터(위탁)
부설기구 기능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2.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3.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시민사회 관련 현황·통계 조사 5. 시민사회 관련 국내외 우수 사례 조사·연구 6. 그 밖에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	1.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2.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3.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4.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5. 공익활동에 관한 상담·컨설팅 6.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단체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7. 공익활동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8. 공익활동의 지원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9.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10. 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재정지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다른 용도 사용, 실적 부진시 시정요구	예산의 범위내 지원

## 지정토론5

안명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경기도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안명균(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2020년 변화되고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잘 정리해주신 윤종화 위원장과 경기도 시민사회단체-공익활동단체의 현황을 정리해주신 박은호 위원의 발제에 감사드립니다.

민선 7기 경기도는 [협치 도정 실현], [시민사회 활동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실천해 왔다. 이를 위해 협치기본조례와 공익활동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협치위원회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2020년 3월에는 경기도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이렇게 경기도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계획들이 본격화 되었지만, 발제에서도 제기되었듯이 2020년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변화, 코로나 19 이후 시민사회의 변화들이 기존 계획과 정책, 사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발제에서 제안된 내용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이후 활동 과정에서 느낀 몇 가지 의제와 간단한 대안을 제안한다.

### 1.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경기도의 제도와 사업에 반영 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원칙과 근거를 반영하여 「경기도 공익활동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에 협치의 한 축인 「경기도 시민사회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제도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 시민사회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3조에 근거하여 「경기도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협치의 주요한 한 축인 경기도 시민사회발전 또는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수립, 집행할 근거가 없다.

경기도는 민관협치 기본방향으로 △ 정부주도의 협치 제도 운영을 협력적 수평적 협치로 전환 △ 협치 주체인 민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 협치 제도 운영 내실화 △ 민관협치 기초자료 수집실태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지만 현재 협치 주체인 민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 2. 시민사회발전을 위해 경기도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의 확대

1990년 이후 활성화된 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들의 활동은 지금까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지위 인정과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등에 근거해 조직운영비 일체를 지원받는 소위 빅3 단체를 제외한 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들은 공익활동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만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는 2,500여개로 알려져 있지만, 공익사업지원 예산은 매년 12억 정도 지원되고 있다.

경기도 공익활동증진과 시민사회 발전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0년 이후에는 사회적 경제활동, 마을공동체활동 등 경기도 시민사회 활동 영역의 확장과 함께 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였고, 이런 새로운 영역의 활동은 시·군 지역까지 확대되어 많은 협동조합과 마을공동체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경제활동(대부분 영리활동을 전제로 함)의 경우 법으로 일정기간 인건비 등도 지원되고 있다.

시·군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마을공동체활동 지원 등에서 초기 제안과 운영지원 등 핵심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대부분은 중요한 시민사회의 변화를 담당한 시민단체 활동 자체를 지원하는 체계는 마련하지 못하여 개별 단체들은 운영과 활동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 다행히 2021년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10억의 지역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예산이 확정되었지만, 주민참여예산은 일회성 예산으로 경기도 31개 지역의 센터설

립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공익활동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근거에 따른 본예산의 확보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3. 경기도 현행 사업 집행 체계에 관한 제안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와 공익활동촉진위원회는 위상과 조례 상 근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도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민관협치위원회와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협치역량강화분과위원회]와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소통과 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020년 7월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관리 업무가 경기도 민관협치과로 이관되었다. 경기도의 민관협치,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증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등이 소통협치국 민관협치과를 통해 집행되는 체계가 마련되어 2021년부터는 관련 운영에 대한 집행체계 확립과 사업 확대를 기대한다.

경기도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정책토론회 (속기록)**



## 첨부2. 경기도 민관합동정책토론회 속기록

### 경기도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정책토론회 (속기록)

- 일시 : 2020년 11월 16일(월) 15:00
- 장소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나눔 대회의실

#### □ 인사말

- 이필근(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오늘 경기도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올해 3월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생겼고, 아직 경기도 31개 시·군에 많은 환경단체, 공익활동 등 단체가 있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많이 부족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향후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을 실제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아는 정책토론회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를 해 주신 윤종화, 송성영, 김강식 위원은 도의회 운영위 자격으로 오신 것 같은데, 선출직 도의원이 제일 관심 있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이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다. 김현삼, 원미정 의원 등 시민단체를 하다가 도의원으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오면 정책으로 세우고, 또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 다시 한 번 정책토론회를 축하드리고,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 서남권(경기도 소통협치국장)

시민사회 발전과 중요성이라는 주제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사안이다. 정치 행정의 영역으로만 풀 수도 없고, 경제 영역으로만 풀 수도 없는 우리 사회의 문제, 지역 사회의 문제, 삶의 문제들을 결국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컨트롤하고 부조,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이런 중요한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심의 또 일부 거점 중심의 편차가 있다. 지역 간 편차, 분야별 편차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풀어야 하고, 풀어야 할 난제와 과제가 많다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대통령령 시행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 정부의 방안도, 윤종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송성영 위원장님께서도 촉진위원장으로 여러가지 경기도의 방안들 현실적인 문제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도의회 같이 손잡고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많은 이야기는 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정책으로 반영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민관협치를 중심에 놓고 도정을 펼치겠다는 것이 지사님의 첫 번째 공약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에서 오늘 나오는 주제들을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의 시민사회가 발전하고 공익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 발제

- 좌장 : 송성영(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장)

서남권 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나치게 강조를 해도 우리 협치의 축에 있어서 시민사회가 끌고, 같이 가는 협치가 경기도가 많이 어렵다. 지역도 넓고, 다양하고 31개 시·군이 각자의 개성이 있고, 이걸 어떻게 각기 다른 색깔을 잘 조화해서 가는 게 경기도가 또 다른 우리나라의 협치를 만들어 내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하는 시작하고자 한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참석을 해 주시고 토론회를 어렵게 여는 것에 있어 앞으로 시민사회나 경기도가 협치의 올바른 매김을 할 것으로, 오늘 토론회에 시작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발제1.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변화

- 윤종화(시민사회발전위원회 소통협력분과위원장)

안명균 센터장님께 다루면 다 다루겠지만 본 주제도 벗어나기도 하고 해서 거부를 했으나,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좋은 자리에 제가 알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같이 나눈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나 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불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올 초까지 대구광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4년 정도 맡았는데, 하다가 이제 후배에게 물려주고 다른 영역의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고민이 있다. 도 단위와 광역 단위에서 많은 차이가 나겠으나, 공익활동이라는 것이 황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1년이 지나면 우리가 뭔가 씨앗을 뿌려 놓은듯하게 곳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성장하고 하는 것이 확인도 되고 하여서 기쁘기도 하고 그런 성과를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공익활동이라는 개념을 확정하고 어떻게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주체로 성장하게 할 것인가는 여전히 우리의 과제와 고민이 아닐까 싶다. 오늘 저의 말씀에 핵심적인 내용도 이런 것이다. 그것이 또 한 시·도의 혹은 센터의 노력만으로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적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전체 한국사회 시민사회를 어떻게 담대하게 성장 시킬 것인가를 놓고 논의하는 것이 맞는지 혹은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진행되어야지만 가능한지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들은 사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문제에 쌓여 있고, 복잡하고 하나의 문제가 어느 누구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불편과 고통을 주는 이해 상충적인 상황까지 놓여 있는 정책적으로 복지를 강화시킬 것인지 혹은 교육을 강화 시킬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의 논쟁들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죠.

거기에 코로나 19라는 것이 또 사상 유래 없는 우리에게 큰 고통과 불편과 불안을 주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불평등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상상을 넘어서는 고통까지 주고 있는 사회 문제가 겹겹이 쌓이고 있고, 축적되고 있고 그러면서도 마땅히 풀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가 올바르게 풀어내고 있느냐, 시장이 이것을 해결해 주고 있느냐 또 시민단체, 시민사회가 성장해서 그것을 사회문제 해결에 굳건한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전보다 마땅치 않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 자리 토론회에 중심이겠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시민들의 공익적인 활동의 참여가 그 어떤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라든가 마을공동체는 거의 모든 지방 시·도에서 정책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있고, NGO나 공익활동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일정한 수준에서는 파편적이고, 지역의 컨디션이 지나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을 두고 지방정부나 정부가 시민사회를 사회문제의 해결의 주체로 파트너로써 정책적, 제도적 파트너로써 인정하고 있느냐고 볼 때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지금 입법 환경이 21대 들어서 가장 우호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다. 시민사회발전기본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 법에 대한 입법 활동을 했는데, 그 때마다 계속해서 보수당의 반대로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 상황이나, 당·정·청에서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주요한 입법 과제로 선정하는 등 상당히 주요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저는 우려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입법의 병목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법이 사실 굉장히 많다. 상당히 많고, 이것을 동시에 입법 하자고 한다면 과연 가능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또 시민 사회 내에서 이런 관련법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와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사회의 힘을 업어서 국회에서 입법, 제·개정으로 가고 있지는 아직까지는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린다.

자칫 잘못하면 입법 환경에서 우리가 준비를 못 해서 야당에 반대의 빌미를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법을 동시에 제·개정 할 것인지 아니면 꼭 언어야 할 법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 각 법률 간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섬세하게 살펴보지 않고서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같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들의 과제 중에 입법 제도적 과제를 우리가 쟁취했다고,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민사회 발전으로 바로 넘어갈 것인가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의 과제와 입법 제도적 과제가 어떻게 상호 맞물려서 제대로 조화 있게끔 가게 할 것인가 이것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다. 앞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이러한 입법 과정에서 우리가 각각 서로가 필요한 법을 제·개정 하려다 보면 우리 내에서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입법 환경을 악화 시킬 수 있는 우려가 동시에 있습니다. 지금 일부분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입법의 필요성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적·전략적으로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라든가 노무현 정부 때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등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거죠. 시민단체들,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 영역으로 인식하거나, 국가발전전략의 동력으로 삼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입법 제도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증진을 위한 대통령령이 올해 5월 26일 날 공표가 되었죠. 그러면서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지금까지 37까지는 단순히 자문기구로 차관급으로 했는데, 지금은 심의의결기구로 상당히 격상이 되었고, 실질적인 정책을 이반하는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위상도 장관급으로 장관 6명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상당히 위상과 권한이 대폭 격상되었다고 보시고, 그렇지만 사실은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당시에 못 만들어서 대체적 의미로 일단은 훈령으로 대통령령으로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만들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역으로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기 위원회는 위원장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부위원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하고 있다. 내부에는 제도개선분과와 소통협력분과가 있다. 제도개선분과는 오늘 다루고자 하는 입법 과제 전체를 다룬다고 보면 되고, 소통협력분과는 제가 맡고 있습니다만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의 표준조례를 만들고 확산하는 작업, 지역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역할, 여기에 독특하게 시민사회 국제협력기반 강화라는 의제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국제적인 활동까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9월 18일 날 서울시에서 기존에 있던 조례를 이에 발맞추어서 전부 개정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을 같이 우리가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을 시·도 단위까지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조문을, 세세하게 볼 건 없지만 3조 같은 경우에 시민사회 발전

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정부가 수립하게끔 되어 있고요. 5조 같은 경우 시·도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6조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죠.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조정하는 권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경기도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여기에 부흥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조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두게끔 되어 있고, 11조 관계부처 협의회, 위원회가 요구했을 때 관계부처가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 간단한 것이긴 했으나 내년도에 각 시·도에 공익활동가 관련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발전위원회에서 이 얘기를 가지고 각 시·도로 하여금 시민사회활성화에 대한 재정을 축소하지 말라는 권고문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이름으로 전국 시·도에 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여기서 가능해졌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논의 중인 입법 과제에 대해서 이것은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제도개선 분과에서 압축해 주신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은 20대 때 이런 분들이 노력을 했었죠. 노력을 했는데 못 했고, 이번에 국회 정무위 소관으로 정부입법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은 한번 보시고요. 시민사회 관련 총괄 법이자 기본법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은 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금은 사단법인·재단법인 이 있는데 공익법인은 복지·교육·의료 한정되어 공익법인을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익법인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있고, 여기에 대해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자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공익법인을 관리하는 기구로 공익위원회를 두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공익위원회를 두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윤호중 의원이 발의를 하였고, 지지난주 법무부에서 다시 입법 발의를 했는데, 핵심 쟁점은 위원회를 행안부에 두고자 하는 반면에 법무부가 공익위원회를 관리하겠다. 핵심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아시는 내용일 것이고요.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21대 현재 9개 발의 중에 있는데 상반되게 발의되어 있습니다. 우호적인 측면에서 발의된 것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발의된 것도 있고. 핵심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등록 기준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자는 것과, 사후 등록 및 변경등록을 허용하자는 것. 비용을 15/100에서 30/100까지 비용을 쓸 수 있게끔 하자. 그리고 지금은 이것을 어겼을 시 형벌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태료로 전환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에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보면 보조금은 사업수행 내에서 사업 인건비로 사용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사업인건비로 쓸 수 있게끔 진행하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제도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민주시민교육법까지 얘기가 되고 있고, 여기서 빠진 것 중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 마을공동체기본법, 지난주 저희들이 주관해서 진행했습니다만 지역사회혁신법 등이, 그야말로 법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현재의 정부나 시장의 수혜자에서 이제는 사회 문제 해결자로 성장하고 등장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입법 논의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민사회발전 관련법들은 시민, 시민사회가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하기 위한 자양분, 밑바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현재 가장 우호적인 입법 환경인데 우리의 세심하고 정밀하고, 협업하고 협력해서 법을 풀어나야 하지, 입법 과정을 조율하지 못한다면 사실 상 시민사회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논의를 잘 해서 풀어나야 할 요소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와 시·도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경기도에서도 이 논의를 좀 빠르게 진행시켜 주시고, 서울은 이미 했습니다만 타 지역 어느 지역보다 우선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말씀이고, 저는 이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란 표현을 했습니다. 각종 네트워크가 많습니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공익활동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입법 환경을 조율, 조정하고 같이 협력 할 때만이 우리가 가진 소기의 성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좌장 : 송성영(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장)**

발제가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다. 시민사회 발전과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로만 듣던 걸 얘기를 풀어서 해 주시니까 이해하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난제가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도 조례까지 가는데, 비슷한 조례로 경기도 공익활동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오늘 발제 들으니까 같지 않네요.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하여서 도 조례까지 가는 게 최종목표라 하고 결국은 느릿느릿 경기도가 커서 가지만 달팽이가 산을 넘지 않았어요?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발제2. 경기시민사회현황과 과제**

- **박은호(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연구위원)**

올해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된 이후 두 가지 사업을 센터 직원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어소싱을 통해서 경기도 시민사회 발전,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4~5명 연구위원들이 함께 조사 기획도 하고, 연구 활동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그 결과물들이 오늘 발제문의 일부 실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까지 별로 경기도 내에서 조사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들을 선보이는 것이고, 당사자들의 평가를 근거로 한 이후의 제안까지 드리려고 한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시·군 시민사회 현황이라든지,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당사자 평가에 대한 아웃풋이 최근에 나와서 집중 토론 및 정리가 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진행 중인 점들이 있어서 이후의 내용이 수정·보완 될 수 있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초안을 발표하는 것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PPT 중심으로 말씀드리며, 발제문 풀 자료는 자료집에 있으니 자료집을 함께 참조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와 각 시·군의 시민사회 현황. 경기도 전체 현황보다는 31개 시·군의 현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의 현황이 있는데, 하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현황의 등록과 현재의 현 주소가 있었고, 각 시·군 별 시민사회 연대활동의 기초현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인데요. 앞 발제문에도 나왔으나, 1999년에 비영리민간단체 법이 제정되었고, 법이 1년 후에 발효가 되면서 2000년부터 경기도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100명 이상 회원이 있는 단체, 창립총회를 한 지 1년이 경과한 곳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나름 조사를 하면서 적은 비용과 인력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 물론 조사 중 놓친 점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2,407개가 2020년 현재 남부·북부 합쳐서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효 표본은 792개거든요. 약 33%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2000년부터 지금 20년 동안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경기도가 받아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군은 어디가 등록을 했지도 모르고, 그리고 등록한 이후 관리가 전혀 안 됐다. 보통 우리가 사회적경제 조직이든 어떤 조직이든 보면 1~2년에 한 번 전수조사를 하는 형태를 통해 기초조사를 해 왔는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등록 때만 서류 심사를 하고 그 이후에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나머지 67%는 살아 있는지, 존재 하는지 조차도 우리가 인식 할 수 없다는 게 지금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현실이다. 그리고 시민사회 지원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 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기초자료가 너무 취약하지 않냐 라는 메시지를 주었다. 한편의 과제로는 경기도 내 비영리민간단체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방안을 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모습을 정확히 정리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 공적작업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한편으로 보여준다. 저희가 유효 표본 자체가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봐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운영형태를 보시면 법인도 있고, 임의단체도 있고, 비영리민간단체 등 이런 것들이 비영리민간

단체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표에 있는 법인+단체는 법인이 공익, 비영리 민간 활동하기 위해서 단체를 소속으로 설립했다 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그 단체가 법인도 있고 소위 임의단체라든지 민간단체 등록된 단체라든지 이런 구성이 있는 것이고요. 마을기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처음에 마을기업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받았다는 것은 아니죠. 이게 비영리민간단체가 이후에 경제 사업을 하기 위한 마을기업을 설립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활동 영역은 앞서 말씀한 조건들을 다 하다 보니, 제일 많은 것이 자원봉사 관련 단체가 17.8%, 문화·예술·체육 관련이 10.2%, 환경·에너지·도시재생이 10.5%, 기타 다양한 영역의 활동 조직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 구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책자를 보시면 이사회, 총회, 운영위원회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수의 표 위를 보시면, 총회라고 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곳이 71.7%이다. 71.7%는 2000 몇 개 중이 아닌, 792개에서 71.7%이다. 전체적으로 추론을 하면 현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단체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총회 구조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운영되고 있는 곳이 소수라는 걸 볼 수 있다. 아까 말씀 드렸던 객관적·행정적 통제를 하자는 것이 아닌 알기 위한 조사·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운영위원회라든지 이사회 구성률은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근자가 있는 비율은 70%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잡은 유효 표본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훨씬 더 낮아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 연대활동 현황은 전체적으로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하나는 지역에 상설적 연대체가 있으면서 연대체가 정기회의도 하고 나름 지역 속에서 시민사회 연대활동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이 약 45.2%이고요. 그 다음에 연대체는 없지만 지역의 사안이 터졌을 때, 현안이 생겼을 때 한시적 연대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29.0%이고요. 그리고 연대체도 없고 한시적·비정기적 연대활동이 없는 곳이 12.9%이고요. 연대체나 연대활동 자체가 아예 없는 곳이 12.9% 정도여서 여기에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45.2%를 차지하는 곳이 비교적 경기도 내에 시민사회 활동이 그래도 활발히 움직이는 지역이고, 그렇지 못한 지역도 이렇게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자료집 26쪽을 보시면 협치나 지역에서의 시민운동에 대한 지위 ㄴ관련 현황입니다. 31개 기초 지자체 중에 11개가 협치에 대한 논의라든지, 공론이 그래도 있는 지역입니다. 약 1/3 정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 정도에서 가장 수준이 낮은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O× 처 있는 것 중에 협치 조례만 구성되어 있는 곳이 이제 시작되는, 지역사회 민관TF를 통해서 공론화해서 조례를 만든 곳도 있으나 그냥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조례가 행정 발의 되어서 조례가 통과 된 지역도 있는 것을 포함하면, 현재 상황을 알겠습니다. 협치의 추진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협치와 관련된 기본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현재 각 기초지자체의 협치를 하기 위한 진행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협치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곳이 의정부와 파주입니다.

그 다음 공익활동 관련한 진행 현황은 31개 기초 중 군포가 가장 앞서가고 있고, 그 다음에 구리·안성·평택 정도가 지금 뒤를 따르고 있고, 나머지 한 10개 정도 지역은 지금 공론화 초기 내지는 중기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반 가까이는 아예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지난번 공익활동센터에서 지역간담회를 한 이후에 공론이 일부는 형성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시·군 간담회를 센터에서 했는데, 공통으로 제안 된 사항이 지역에서 니즈가 되겠죠. 활동가 인건비 지원, 아카이빙 정보공유를 위한 플랫폼, 청년활동가 활성화, 시민단체 취약한 부분이 회계와 행정교육 지원, 법률자문, 비대면 활동을 위한 방안(온라인 교육)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마 30개 시·군에서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교적 공통적으로 나온 바람과 요구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각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제안되거나 논의된 것은 자료집 표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집 37쪽에, 저희가 지역별 특성을 판단하여 31개 중에 8개 지역을 선정을 했고요. 적어도 지역에 서 5년 이상 시민사회 활동을 한 중견 활동가 이상으로 대상 군을 섭외해서 FGI를 진행하였습니다. 질문 내용은 표에 들어가 있는 6가지 내용으로 질문을 했고요.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조사 결과에 대한 풀 자료는 나중에 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본이 자료 집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PPT에는 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민사회단체 활동 현황과 과제를 보 시면 지역마다 시민사회 조건이 굉장히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8개 지역이 정말 다른 지역들을 저희가 조 사를 했고, 그래서 활성화 되어 있는 곳과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지역 간의 편차들이 많이 보이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인력이나 재정이나 공간이나 활동 인적 자원에 대한 재생산 이런 것들은 전에 비해서 시민사회 단체의 상황이 대체로 열악하다. 이거는 이제 좀 큰 도시건 연 대활동이 활발한 도시건 아니건 간에 이러한 어려움은 함께 겪고 있고, 전에 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 보편적 이고요. 그 다음 시민사회 활성화에 있어서 정치지형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요. 시의회가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그리고 같은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초선이나 재선이나 3선이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특히 교육이나 강의나 필드에서 시민들 과 대면하는 활동을 주요 활동으로 삼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겨울과 같은 2020년을 보냈고 요. 주로 컴퓨터 앞에서 정책 생산을 하고 활동을 하는 비중이 높은 곳은 별 타격이 없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연대 활동의 문제점과 과제,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일상적인 연대활동이 쉽지 않다. 그 이유 는 다양하다. 그래서 세부적 설명들이 41쪽 자료집에 나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공 간을 통해서 연대의 계기를 만들 수 있고, 만들고 싶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익활동지원센터, NPO센터 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중점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관협치 현황과 관련해서는 좀 의미 있는 멘트인데요. 여전히 시민사회는 행정부의 파트너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5년 이상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지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시민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이 있느냐고 했을 때 거의 다 모든 활동가들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협치는 대세인 것 같다.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 였고요. 그 다음에 협치를 하기 위해서 좀 세밀하고, 구체적인 접근과 기술들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제 행정도 마찬가지로 시민사회도 마찬가지로라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는 공익활동 지원시스템 은 아직 없는 것 같다. 이게 이제 활발한 지역은 8개 지역에서 비교적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공익활동 지원 방안, 시민사회 지원 방안으로는 대답하신 분들이 4가지의 답변으로 가름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활동가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그리고 바람과 가능성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현실로 실현하는 것 에 대한 고민이 지금 필요한 때라고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재충전의 기회가 제공 되는 그런 것이 좋겠다. 그 다음 언택트 시대를 대비해서 대비하고, 올해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민 운동의 방식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지원 사업을 해왔던 분들이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e나라도움이 들어 오고 난 다음부터 느끼는 것 같아요.

시민사회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적 불평등이라든지 민주주의가 각 지역에서도 시민사회의 공통된 과제라 는 것들이 여실히 드러났고, 그리고 과거처럼 운동의 선각자가 자기 지인들이나 역량을 통해서 돈도 모으고 사 람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운동하던 시대는 20년 전과는 여전히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제도적이 고 사회적이고 체계적인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자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제가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 고 합니다. 하나는 시민사회활동 인적자원 재생산을 위한 지원. 이거는 지금 지자체 마다 하고 있는 디딤돌 일자 리 있잖아요. 2년 동안(24개월) 인건비의 자부담률 10~20%/80~90%를 지원하는 것처럼, 물량적으로 인적 인건비 를 지원하는 것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두 번째는 특히 개별 활동보다도 시민사회의 지역에서의 연대활동에 대해서는 필히 이것들이 지원되는 시스템을, 그것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제안해서 그것이 경기도 정책화 되든지 어떤 방식이라든지 간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지역에서 시민사회에 연대활동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시 민사회 개별 활동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절실한 요구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시민사회 활 동에 대한 기부금 및 모금 활성화 지원으로 아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재정 도 있지만 현재 이

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세비를 1년에 1억 가까이, 1억 넘게 받고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내면 100% 세액 공제 되어 집니다. 10만원까지. 근데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조직이나 활동가들은 국가에서 10원 한 푼 받지 않는데, 아무리 기부금을 모아도 기재부 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30% 소득 공제를 해 줍니다. 이거는 세법 자체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회의원 세비와 대응을 해서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법을 개정하는 것을 장기적 과제로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재에는 지금 지자체가 착한 임대인, 새희망자금 등 이런 식으로 아니면 국민, 도민 기본소득 등을 했던 것처럼 모금 활동을 독려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 단체에서 100을 모금했다고 하면 매칭으로 100을 더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100을 기부한 사람에게 그 리워드 해지는 것이 있다든지 저는 이것을 세법을 개정되기 전에 경기도와 기초지자체가 결의를 하면,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중앙 정부를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시민 사회 지원에 대한 모 범들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익지원센터가 기초단위에서도 설립이 되고, 이런 체계적 공익활동 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 제안은 근데 저희 정 책연구팀에서 정리화 된 제안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토론에서 나온 것까지 포함해서 이후에 정책연구팀이 쟁점, 집중 토론을 해서 정식 제안에 대한 내용들을 이후에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좌장 : 송성영(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장)

첫 번째 발제자인 윤종화 위원장님의 국가나 희망 섞인 그런 행보, 이런 걸 들었던 반면 두 번째 발제는 경기 도의 현황,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조금 달팽이가 산을 쳐다보니까 넘어 가야 하는데 갈 길이 먼 그런 것도 조 사하면서 많이 짚어 주셔서 앞으로 많이 유익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안 없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해서 정책적 토론회를 통해서 만들어 내고, 시민들의 참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으 니 우리의 갈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정토론

- 좌장 : 송성영(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장)

자료집에 나와 있는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정토론1. 이정아(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두 분께서 발제를 해 주셨는데요. 윤종화 위원장님, 박은호 위원님께서 진단하고 있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 전략으로서 시민사회진영 활성화 방안은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사회의 공익적 자분을 형성하고 확장해 나가야 하는 이유, 두 발제자께서 공히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더욱 긴급한 환경에 놓여있음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 다.

1999년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 보장, 그리고 민간단체로의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법이 제정 되었고, 2000년 시행 이후에 부문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법 조항이 늘어나면서 일정 부분 공익활동 지원 범위가 확 장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적극적 조치를 담보하고 있는가에 이르면 여전히 포괄적인 시민 사회 활성화 입법의 수준 확보는 제자리걸음이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실효성 낮다는 평가는 일반적입니다. 두 발제에서 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보여 온 태도에 공히 우려하고 있음이 읽히는 데서도 확인이 됩니다.

더욱이 시민사회를 적극적인 의미에서 협업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지역 삶의 가 장 기초를 이루며 사회 의제를 드러내고 때로는 해결해나가기 위한 주체로서 역할을 해 왔음을 인정하지 않았

는 그간의 경험치는 제도개선과 함께 민관 거버넌스에 관한 질적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러한 비판적 평가에 대해 변화의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경기지역 시민사회 현황파악을 위해서 31개 시·군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은 그 동안 다양한 공익활동에 대해서 아까 박은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현황 파악이 단선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에 비해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집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귀한 선형자료가 될 것 같고요. 지역 연대 활동의 교차점을 발견해갈 수 있는 정보로서의 가치도 크다고 보여 집니다.

박은호 위원께서 발제에 적시한 바와 같이,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내 성장지원팀에서 이번에 노력을 해 주셨는데요. 내용을 보면 경기권 내 확인 가능한 단체가 792개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코 적은 수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주요 활동 내용을 봐도 여성, 인권, 평화통일, 정치경제, 문화예술, 사회복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고,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세대별 접근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 국제연대, 동물보호, 먹거리 등 우리 일상의 삶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제실현을 위한 주체, 또는 지지집단의 성격을 보면 비영리법인 20% 정도, 임의단체와 마을기업이 6% 정도 여기에 법인과 단체 즉 일정 규모를 확보하고 있는 비율은 3.5%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어떤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민관 거버넌스가 어느 지점에서 일어나야 하는지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여성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지역 대부분 NGO 단체들이 현재 인적, 조직적, 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위에서 언급한 내용의 복합적 이슈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요. 여기에 또 연대는 작동하는 성향에 따라 영역별, 분야별 차이가 존재하며, 간극 또한 있음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독자 생존을 어떻게 든 모색하거나 아니면 소멸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상황에 몰려있다고 보여 집니다.

여기에 국가 또는 지방정부에 포섭되어 행정운영 시계에 맞추기 위한 발전대상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지역 운동의 주체로서 각 분야별 역할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세워 나가는 것 만만찮지 않은데 이것 또한 과제로 얹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윤종화 위원장께서 제기하고 있는 <제도가 변화되고 개선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시민사회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는다. 제도의 변화와 시민사회 활성화의 과제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사회문제 해결에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시민 주체성이 성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에 비중 있게 논의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게 되고, 위에 문제의식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발제 된 내용 중 시민사회활동 인적자원 재생산을 위한 지원, 지역의 과제 대응단위인 시민사회 연대 활동에 대한 물적, 인적 지원, 시민사회활동에 대한 기부금 및 모금 활성화 지원 등등의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제가 실질적인 추진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지금 이렇게 제시된 의제 자체가 출발의 길이 되고 단초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요. 민관협업 과정에서 수행의 자율성 보장과 수평적 논의 구조를 어떻게 함께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가 경기도 공익활동 환경변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나없이 같이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고요. 지금에서 이제 경기도에서도 어찌 되었건 민관 거버넌스, 협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지점에 저희들이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야 할 것이고, 여기 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수행의 자율성 보장, 수평적 논의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은호 위원께서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기부금, 모금 활동과 관련한 고민을 비추시면서 매칭에 대한 사업도 고민을 해보자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모금공동회가 지역의 민간단체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일대일 매칭으로 기부금 모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속해 있는 여성단체연합에서도

진행해보려고 했다가 내용이 만만치 않았고, 이 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지역의 시민사회 운동을 하고 있는 단 위에서 연대를 통해서 같이 공동 작업으로 진행을 해 보면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의제도 이후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 안에서 같이 논의의 주체를 만들어 나가보고자 하면 싶습니다. <끝>

#### - 좌장 : 송성영(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장)

이정아 대표님의 기대와 더불어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려, 여러 가지 토론에 대해서 우려성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잘 해주셨습니다.

#### - 지정토론2. 박완기(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제도개선분과위원장)

첫 번째로 경기도 시민사회에 대한 종합적 실태조사와 진단이 시도된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봅니다. 2,407개 단체 중 792개 단체를 실태조사하고, 31개 시·군중에서 28개 시·군에 대해서 순회간담회도 했고, 8개 심층인터뷰까지 해서 경기도 시민사회나 공익활동에 대한 현황과 단체의 고민을 보여준 게 가장 의미 있다고 보여 지고요. 아까도 발제에서도 얘기했지만 비영리민간단체 이후에 별로 관리되지 않는 기종한 자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행했던 공익센터나 공익활동 연구팀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오히려 전수조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발전된 자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시민사회에 대한 접근이 촛불 시위나 코로나 19 대응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시민 의식은 매우 성숙했고, 사회적경제·마을만들기·SNS를 통한 자발적 시민 모임들을 통해서 보듯이 시민사회가 되게 확산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전통적 의미에서 얘기했던 시민단체들의 어려움들은 전에 보다 좀 더 가중되고 있는 오히려 저수지는 좋아졌는데 물고기는 힘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운동할 때는 시민운동 하면 다 공익적인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2010년을 전후해서는 시민사회 내부도 이념적인, 좌우 이렇게 나뉘지기 시작해서 오히려 여기에서 시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시민사회도 넓어진 시민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어떤 활동을 해갈까를 고민해야 하고, 또 하나 지방정부도 전통적인 의미의 시민단체가 아니라 폭넓은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그쪽을 대상으로 잡고, 거기를 공익활동의 지원 대상으로 잡아서 제도화 시키고, 정책화 시키고,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세 번째로 올해 코로나로 전체적으로 어려웠는데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하고,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지역 간담회라든지 시민사회에 작은 희망을 준 것들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공익활동 지원시스템이 부족하다.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없다. 그 다음에 활동가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전반적인 문제의식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이쪽에 대해서 제도적·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런 와중에 어쨌든 경기도의 민관협치 예산에서 경기도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과 경기도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예산 각 10억 원이 일단 편성되어서 경기도의회에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은 나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다섯 번째 협치와 관련해서는 제가 민관협치 위원이어서 나왔기 때문에 협치를 추진하는 시·군이 경기도에 11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군하고 경기도의 적절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군에서의 모범적인 민관협치 사례가 나타나서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윤종화 위원장께서 발제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달에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이 제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는 대통령령을 좀 넘어서 몇 가지 아까 쟁점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잘 정리한 형태의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협력과 조정 노

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요. 또 하나는 기왕에 제시되고 있는 대통령령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후속조치가 적절하게, 신속하게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대통령령에서 <시·도에서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제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권고>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특히 전국에서 보면 가장 많은 비영리민단단체가 경기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2017년 기준으로 2,215개, 전국 18%입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된 것들이 효과를 가지려면 경기도에서 구체적인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또 하나는 2019년에 수립된 <경기도 민관협치 기본계획>에서도 이미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이나 <시민사회조직 지원시스템 마련>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큰 방향에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기도에서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 진 것에 이어서 조례를 개정하고, 시민사회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으나, 큰 틀에서는 빨리 시도해 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 - 좌장 : 송성영(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장)

간략하게 써오신 것 중심으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좌우나 진보보수 양극화에 치달는 것도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것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공감 가는 부분도 있었고, 확대하고 박은호 운영위원장이 얘기하신 전수조사 필요할 것 같습니다.

#### - 지정토론3. 한유경(경기도 민관협치과 협치기획팀장)

오늘 발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의 입장에서는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될 듯합니다. 일단 저희가 볼 때는 시민사회 조직은 현재 시민사회 영역에서 분열적으로 존재하는 시민을 공공선을 지향하는 조직화 하는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 당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이후로 저희 경기도에서도 2003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서 지원하기 시작했구요. 지금 현재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별법규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보조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간위탁금’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걸 겁니다. 그거 이외에도 각종 기금이나 도 출연기관의 각종 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데요. 문제는 이게 체감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박은호 위원님께서 연구해 주신 서류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가 단지 20%가 법인이고 나머지가 단체 형태인데요. 문제는 지원하는 것들 대부분 법인 위주입니다. 아마 그 체감도 자체를 무시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민사회에서 대통령령이 제정에 따라 매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방정부 이니까 이 단위에서 고민해야 될 몇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령 같은 경우에 보면 중앙단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중앙단위 위원회 구성은 명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문제는 재량적 규정입니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속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총리실에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이 수행되면 내년 초 쯤에 총리실에서 일정 권고 내지는 지침을 만들어서 지방정부에 시달이 될 겁니다. 그 때 저희가 이걸 어느 범위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 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민해야 할 사항은 조례와 위원회, 기본계획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흔히 발전적 해체, 발전적 해석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보면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이 작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거의 내용 자체는 이번에 시민사회 규정과 많이 유사성이 있습니다. 일부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

한 상태이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활성화를 위한 고민하고 있는 형태가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경기도 조례를 보면 물론 다른 법령에도 보면 있겠으나 약간 결이 다르지만 시민사회를 매개로 해서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들은 제도들마다 보면 다들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게 위원회 만들어 주세요, 기본계획 수립해 주세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행정에서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굉장히 영역이 세분화되는 문제가 생겨 버립니다. 큰 틀에서 한꺼번에 같이 보는 시야가 많이 좁아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내부에서도 보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시오, 우리 도의회에서 권고 하시고, 국가에서도 많이 권고를 합니다. 감사 때마다 빠지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중·장기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중·장기계획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기본계획은 어떠한 조례의 기본계획으로 대신한다고 하여 대위를 몇 개 하고 있는데요. 사실 못 쫓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만들어진 조례를 보면 중·장기 기본계획 만드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지금 못 쫓아가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런 큰 시민사회 활성화, 큰 범주의 논의를 할 때는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틀을 가지고 전부 다 한 번에 포용하고, 포섭하는 큰 틀의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한 가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시민사회와 접하는 영역을 제3섹터라고 합니다. 사업 방식에 내용을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탁이고, 하나는 보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외에 다른 것들을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았고, 제도화 된 영역이 없습니다. 위탁은 공공기관의 일입니다. 정부의 일인데, 민간이 해 주는 것이고요. 보조는 민간의 일인데,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당연히 위탁은 정부 일이다 보니 엄격한 통제가 따릅니다. 대신에 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조는 민간의 일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 민간의 일이므로 돈이 될 때, 예산이 되면 지원이 되고 예산이 안 되면 깎습니다. 불안정성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애시 당초 처음에 기획할 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위탁의 형태입니다. 사무위탁의 형태인데요. 지금 대통령령에 따른 공익활동연구기관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위탁 형식보다는 보조 형식에 가깝습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과는,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하지만 일단 지속가능성에 있어서는 경기도 조례가 낫다고 보고 있고, 자율성은 대통령령이 훨씬 낫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 한다고 했을 때 다양한 아이тем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아이тем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할 때는 좀 아까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개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새로운 과제를 만들 때 새로운 과제를 우리가 정부에 던지면 정부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이거 기존에 이미 있어요. 기존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 얘기는 기존에 사업하고 내용을 목적이나 절차라든지 대상을 바꾸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든지 아니면 기존에 사업을 리모델링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 기존에 사업에 대한 고민이 같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할 때는 많은 공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가장 큰 겁니다.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모색하는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기가 공무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매모호한 영역입니다. 그 영역을 가지고 보다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곳이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소통이나 참여해서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요. <끝>

#### - 좌장 : 송성영(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장)

애매모호 하니까 우리가 협치를 하자는 거거든요. 협치를 통해서 애매모호한 것을 없애는 것이 협치인 것 같습니다.

#### - 지정토론4. 안명균(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두 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 특히, 윤종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와 관련하여서 두 달

전에 경기도에서 공익지원 조직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까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지역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모인 사람들을 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겹쳐 있습니다. 사실은 시민단체라고 부르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자신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사회적경제로 협동조합으로 문제를 풀기도 했고, 마을공동체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더니 막상 사회적경제 영역과 마을공동체 영역은 발전해 가는데, 그 문제를 제기했던 지역의 시민단체는 도리어 힘들어 하는. 이게 사실은 지역 간담회를 하면서 많이 느낀 내용이어서 관련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모여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강조 드리는 이유는 자랑하기 보다는 법 제도를 바꾸기 전에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사람들 간의 협력과 협의, 네트워크는 충분히 제도화 없이 가능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지역간담회를 했더니 30명 정도 모여서 활동을 열심히 모색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맘카페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들한테 100명 회원 조직, 딱딱한 규정을 이야기 하는 순간 지역에서 공익활동들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건들을 비영리민간단체 법률에서 30인으로, 50인으로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리어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시민사회 속에 같이 건강한 흐름 속에 합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걸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토론회 주제이긴 하지만 이걸 전제로 하고 저는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건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 가까이 된 것을 반영하면 굉장히 전향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경기도가 이걸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이 정신을 실현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내용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은 서울시처럼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반영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될 때 몇 가지 장단점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정하는 걸 장기 방향으로 하되, 그 전에 경기도 시민사회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근거라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거를 민관협치위원회 사업으로 담아서 진행하든, 아니면 그걸 위한 원포인트 개정을 통해서라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든 이렇게 해서 통합적인 시민사회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가지고 장기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센터에서 진행한 비영리민간단체 조사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법인이라고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법인단체가 아닌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법인격을 가진 단체가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 받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13개가 법률에 따라서 잘 아시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그리고 고엽제 피해단체까지 시설비와 운영비가 나옵니다. 그게 13개 단체나 됩니다. 근데 비영리민간단체 여태까지 시민사회에서 열심히 일해 왔던 단체들은 법에 따라서 시설비와 운영비는 절대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형평성에 맞는 건지. 옛날에 전두환·노태우 정권이 만들어 놓은 법의 근거에 따라 현재까지 이려고 있어야 하는지.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이걸 한 번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개선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야 할 텐데, 그 방식 전까지는 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개별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이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처럼 곧 준비해서 내년에 개설을 하겠다고 하는 군포공익활동지원센터처럼 경기도 31개 시·군에 적어도 이 체계가 시급하게 마련이 되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어서 10억 예산으로 한 다섯 개 정도의 지역이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주민참여예산제는 1년하고 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본예산과 계획으로 해서 지역의 공익활동지원 체계를 마련하는데 예산이 지원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구요.

그 다음, 경기도에 사실은 관련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체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체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공익활동증진, 민관 협치 라고 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분야를 경기도에서는 소통협치국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 이걸 내부에서 충분히 가능한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관협치위원회와 공익활동촉진위원회가 있는데 겹치는 분야가 지역의 공익활동을 촉진한다, 시민사회를 활성화 한다는 것은 겹치는 분야입니다. 근데 두 개의 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는데, 공익활동촉진위원회는 권한이 거의 없는 위원회이고요. 협치 위원회는 권한은 있지만 집중이 이 부분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잘 통합,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제도적으로라도 통합할 방법들이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가 경기도에 2,500개 가까이 되는데 실태조사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마저도 민관협치과로 7월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을 다 모아서 정말 전수조사 하고, 대책도 세울 수 있는 방식으로 이번에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토론회 결과에서 나온 의제들을 구체화하고 세밀화 하는 후속작업들이 꼭 있었으면 합니다.

**- 좌장 : 송성영(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장)**

실질적 공익센터장으로 접해 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공감을 다들 하실 거고, 저도 공감을 하고. 공익활동촉진위원회 활성화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이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위원회의 하나로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위원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31개 지역에서 골고루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편중되지 않도록 잘 구성되어 있어서 잘 활용하면 도에서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지정토론5. 김강식(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저는 기획재정부 소속이기도 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입니다. 협치소통국이 저희 상임위에 있다 보니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앞서 발제해 주신 두 분의 말씀 중에서도 제가 평소애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던 부분들,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 데이터로 잘 정리해 주셔서 오늘 제가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토론자 분들 중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단체에 대한 애매모호함은 사실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역량이 훨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절차 속에서 믿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확정적으로 어떤 위탁 등 여러 사업들 속에서도 사실 할 수 있는 기능이나 역할들에 대한 것들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인식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항상 저도 20여 년 동안 밖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민주주의 발전하고 우리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협치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축으로써 시민단체에 대한 부분들은 필수적인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역시 제도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신뢰가 없다는 말씀도 해 주셨지만, 지원해 주는 부분에 제도들이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일부기관들에 대한 것들은 법적인 제도들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상당수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근거가 없다보니까 그냥 보조사업 정도나 공익활동지원사업 정도의 1년에 경기도가 작년에는 8억, 올해는 1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하는 활동들, 기타 민간위탁이나 공모사업 정도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사실 과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

시민사회단체가 과거에 사회 변화나 환경·경제·문화·여성 이런 문제들 속에서 최근에 센터장님 말씀처럼 사회적경제 활동이나 마을만들기 영역까지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저는 아쉬운 부분들,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구성원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봉사나 희생에 대한 부분들로 상당기간 유지되어 왔는데, 지금 세대가 변하고, 시대가 변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들을 강요해서 과연 이것들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는데, 마침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나 내용을 발제자분들이 이야기 해 주셔서 거기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나 경기도의회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한 번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활동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자면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대 자치단체이고, 그에 걸 맞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다면, 물론 지역에 있는 부분들의 네트워크와 협업도 중요하나. 또 하나의 제안을 한다면 국제사회 연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공적 외교나 아니면 국제개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면 합니다. 그 영역들을 넓혀가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의회에 들어와서 저희 상임위에서 마침 국제개발원조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턱을 낮추면서 민간 쪽에서 활동하고 있던, 민간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이런 국제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턱을 낮춰놨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단체들이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있어 참여가 적었다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공외교나 국제개발원조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경기도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활동해야 할 영역 속에 하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서 실천이 필요한 시기여서 발제도 해 주시고 토론자분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2020년 5월에 제정된 규정이 새로 만들어 졌습니다. 상위법은 없으나 조례로 만들 수 있는 큰 문제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런 기본계획 틀 안에서 활동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들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정들을 짧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시간을 절약하는 부분이 있고. 경기도만의 내용을 담아서 같이 논의하면서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자적인 역할 속에서 공익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고, 근데 사실은 사업의 내용이나 예산의 범위들을 살펴봤을 때 턱없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센터는 만들어 졌는데, 과연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냐에 대한 지적들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의 반영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역할을 좀 더 중간자적인 역할 속에서 허브의 기능들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네트워크와 협업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 범위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 앞서 말씀하셨던 주민참여예산 정도의 단발성이 아니라 그 부분들이 인력에 대한 지원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른 사업들과 관련하다 보면 많은 부분들에서 전문 인력이 되었든, 인턴십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저도 고민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활동가들이 새롭게 배출하고, 우리가 육성하고 키우고 공익성과 공정성에 대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들이 없다보니까 그냥 참여하고 희생하고, 그러다보니까 정체되었다는 느낌들을 많이 가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여타 사업들로 보면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들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력비에 대한 지원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그 분들이 남아서 다시 지속가능한 부분들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그 공익적인 사회활동에 대한 인력들을 배출해 낼 수 있는 부분들에 재정적인 제도적인 부분들에 지원을 의회에서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있어서 그런 방법들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의 예를 들자면, 민주시민사회 시민교육 같은 것들이 경기도에도 조례로 되어 있고, 경기도 교육청에도 조례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때 집행부가 시민단체들과 같이 연계하라고 의회에서는 요구하지만 아까 신뢰에 대한 부분들. 어디가 어떤지 잘 모른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나 현황에 대해선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나 현황에 대해선 센터에서 익숙히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추적하시고 연결해 주는 부분들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공외교, 국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시민단체나 민간단체들 활동영역을 확장하는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기도에 걸 맞는 시민사회활동과 활성화를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영역으로 쓰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 2,400개 정도 되는 경기도 민간단체 현황을 듣고 실제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거르고 뺄 수 있는, 추후 관리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막연하게 숫자만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다. 그 속에서 연락하고 확인해 보면 상당수가 이미 흔적조차도 없는 단체가 많을 것이기에 그런 것들을 제외한 것 속에서 또 하나의 방법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있는 부분들 속에서 제도적인 부분들 속에서도 경기도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같이 이야기 하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좌장 : 송성영(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장)

위원님이 하셔야 할 일들이 많으셔서 오늘 말씀하신대로 도의원님들이 움직이실 것 같습니다. 김강식 의원님이 도의회에서 협치 부대표를 맡고 계시니까 의원님한테 기대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 참가자 전체 자유 토론

- 송성영(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장) : 토론까지 마쳤고, 전체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사실 말씀이 있으시면 참석하신 관중석에서 받고, 온라인에서 한 것은 뒤에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 참석자1 : 군포에서 왔다. 안명균 센터장님께 질문을 하겠다. 2020년도 올해 경기도 사업 예산 중 사업비가 어느 정도로 비율이 됩니까?

- 안명균(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올해 출발한 해이기에 사업비는 적게 책정되어 있다. 8억 전체 중 사업비는 2억이다. 사업비 비중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

- 참석자1 :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비가 많아서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원을 많이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드린 질문이다. 지역 활동가들 번아웃 상태이다. 에너지 소진이 많다 보니 조직운영과 보조금 사업을 또 해야 하고 과중한 업무에 많이 힘들다. 그러니까 후배들이 올 수 없다.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왔는데,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직접 지원이 안 된다면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라도 대폭 필요가 필요하다. 그리고 올해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실무 하는 분들이 행정절차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회계 프로그램을 경기도 센터에서 공용으로 구축을 해서 각 시·군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 송성영(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장) : 4가지 정도 질의와 의견이 주셨는데, 모여서 나중에 자세하게 사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고, 아까 내용에 대해서는 센터장님께서 단답을 해주셨습니다.

- 김강식(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 사업비 관련해서는 2020년도는 아직 시작단계여서 그런 부분이었

습니다. 21년도 사업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확인했는데도 아주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논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인건비 4억, 사업비 4억 입니다. 사실은 여덟 분을 뽑아놓고 사업 양으로 보면 인력을 줄이든지, 사업 양을 늘리든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만들어진 것이라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사업의 양을 늘려줘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별도이기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라 사업의 내용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범위가, 사업비가 2배 이상은 늘어나야 한다는 걸 현재 이야기 하고 있다. 인력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재단이나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의 범위를 논의해서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시도할 수 있도록 여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나 회계에 대한 부분은 저도 민간 쪽에 있을 때 회계 프로그램, e나라도움은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행정과 회계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민간 영역 쪽에 있는 분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가적인 부분에서 하다 보니 크게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할지 모르나, 작게 하시는 경우도 똑같이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대로 제안도 하고, 바꿔달라고 하고 있으나 경기도 차원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또 다른 상당한 금액들이 소모되는 부분들이라 오히려 제도적인 부분들의 제안을 통해서 조금씩 바꿔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평소에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들에 공감하는 부분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같이 대응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정아(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회계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어떤 지점에서 어려운지 현장에 있다 보니 공감합니다. 시스템 구축은 생각이 다른데, 단체 성격에 따라서 계량화 되고 안 되는 곳이 있다. 일괄로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면 옛날 모 단체가 숫자를 파악할 수 없는데, 최대치를 파악할 수 없다보니 최대치인 '99'를 넣었다. 그게 정확한 수가 아니다 보니 나중에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기본 시스템이라고 할 땐 반드시 한계가 존재할 것이기에 오히려 저는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기왕에 올해 조사를 통해서 지역현황이 파악이 되었다면 분야별, 규모별로 나눠서 오히려 회계 교육 자체를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해 보는 것,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제안 합니다.

- **송성영(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장)** : 도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 **한유경(경기도 민관협치과 협치기획팀장)** : 두 분 말씀 적극 동의합니다. 회계 쟁점은 아마 다 저희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행정이 2년마다 부서를 옮깁니다. 그때마다 파트너십이 달라지는데 들어오는 서류가 매년 해마다 달라집니다. 위에서 감사를 받을 때 서류가 특정 기준이 저희도 애매합니다. 가급적 안 당하려다 보니 가장 엄격한 기준을 맞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고민하는 영역입니다. 함께 공유해서 표준화 하는 방향은 같이 논의했으면 합니다.

- **송성영(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장)** : 온라인으로 질의사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읽고 답변을 해주시고, 할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정책적 지원을 위한 지원이라는 것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뢰할만한 단체를 선정해 지원하고, 사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는 없을까요? 공모사업 방식으로 건건이 지원하는 것의 번거로움이 큼니다.

- **박은호(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연구위원)** : 파격적 제안인 것 같다. 전체적은 아니지만 일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모사업은 형평성, 기회의 균등성 등이 있기 때문에 즉답으로 드릴 순 없으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연구 팀에서 아직 최종 리포트 작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에 대해서도 실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연구팀이 도움 줄 수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 **참석자2** : 조사한 기관들이 도대체 어떤 단체나, 그런 지를 표본조사를 하셨는가. 사실상 2,000여개 단체가 있

다고 하는데, 존재 여부 사실상 굉장히 힘들다고 보는데. 박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은호(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연구위원)** : 기본적으로 이 조사는 공익활동연구팀에서 조사 기획을 했고, 실제 조사는 31개 시·군에 그 지역에 비영리민간단체 중 한 곳을 공익활동지원센터 성장지원팀에서 섭외를 해서 저희가 확보한 경기도 자료인 비영리민간단체 리스트를 지역별로 나눠서 드렸다. 그걸 기반으로 지역에 한 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전화를 걸고, 구글이나 네이버로 기초정보를 검색하고,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공권력이 조사를 한다고 하면 응답률이 좀 더 높았을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민간이 조사를 하다 보니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거기까지 뽑아내는 데 그친 것 같다.

- **송성영(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장)** : 발제자 두 분과 토론자 분들 중,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윤종화(시민사회발전위원회 소통협력분과위원장)** : 제가 말씀 드린 것 보다 연구하신 건 전국적으로도 중요한 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장을 해 주셨으면 한다. 대통령령이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 결론적으로 시민발전기본법으로 가야 되는 건 분명하고 다만 여기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제적으로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법이 실질적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와 더불어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영리단체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의제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시민사회하고 오히려 소통이 안 되어서 문제가긴 한데, 시민사회발전위원회 하고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이야기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은호(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연구위원)** : 아까 빼먹고 안 드린 말씀이 있어서요. 윤종화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신 14쪽에 있는 것 중에 저는 가장 와 닿는 게, 8번 민간위탁제도 개선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다 담겨있지 않지만,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일반 민간위탁과 협치형 민간위탁으로 가이드에서는 구분을 합니다. 협치형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공공기관에서 공사발주를 할 때도 일반 관리비 내지는 이윤을 인정하듯이 그리고 경기도가 에너지센터를 예전에 테크노파크, 출연기관에 주면서도 위탁 수수료 책정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광역이나 기초지자체의 민간위탁의 경우에 일반 관리비가 됐든, 위탁 수수료가 됐든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서 지역의 시민사회가 공공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을 위탁 받을 때 그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보상 받고 그것을 동력으로 해서 시민사회 활성화 하는 마중물 역할하기를 전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빨리 확정되어서 지자체로 내려 왔으면 좋겠습니다.

- **박완기(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제도개선분과위원장)** : 한유경 팀장님 발제하고 여기 아까 경기도가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중앙에서 시민사회하고 관련된 기본계획이 나오고 의회에서 김강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조례에 대한 검토들을 하고, 시민사회에서 기왕에 민관협치위원회에서 시민사회발전 종합계획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내년 정도의 시점에는 맞을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한 가닥들을 정리를 하되 아주 속도를 높이지 않더라도 경기도에서 후속으로 시민사회발전 기본계획이라든지, 조례 개정이라든지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초안을 이번 연구팀에서 조금 더 정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 **김강식(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 박은호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지금까지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공공에 대한 부분들은 공기관 대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탁사무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이 없어서 지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지침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들은 규정을 넣었습니다. 민간위탁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수수료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민간위탁 사무조례

개정을 할 때 이 부분들이 포함시켜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예산의 반영이 필히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비율에 대한 부분은 협의가 필요하나 민간의 영역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한다고 명문화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안명균(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하나 살짝 해명을 드리자면, 올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작은 규모의 공모사업을 진행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올해는 조그마한 사고라도 나면 출발에서 어려움이 있겠다고 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했다는 것은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잘 해결할지 고민은 하였습니다. 사실 내년에 주민자치예산제로 시작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청년 공익활동 인턴지원 사업이 내년에 시작될 거고, 지역 공익활동 설립과 관련해서도 지원이 시작될 거고, 도리어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도 거의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어떻게 안정적인 체계로 만들 거냐 그리고 성과를 내어서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지는 경기도의 공익활동 단체들이나 시민사회가 같이 고민하고 제도화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하고자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 **송성영(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장)** : 감사합니다. 센터장님께서 마지막 발언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경기도가 안 가본 길을 많이 가고 있어서 일전에 좌장으로 소회를 드리면, 서울을 자꾸 빗대어서 서울이 가는 길을 계속 얘기하는데 서울과 경기도는 확연히 많이 다릅니다. 서울이 많이 앞서갔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서울이 처함과 경기도 지자체가 처함이, 정책적인 것은 실제로 내용은 그렇지 않지만 달라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늦게 출발을 하고 이런 건 있지만 결국은 끝까지 간 사람이, 인내를 가지고 이기는 것처럼 먼저 갔다고 잘 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다른 것들을 엮어나가는 작업들이 경기도에서 시작되어서 천천히 가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뤄낼 걸로 저는 확신을 하고 공익활동도 그렇고 시민사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 발제자들 수고 많이 해 주셨고,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19에 청중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온라인에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밑거름으로 해서 경기도가 공익활동이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정책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정책과제 제안

# 경기도 민관합동정책토론회 결과

## [경기도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 정책과제 제안

정 책 과 제
① 경기도 시민사회발전 및 공익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제·개정
② 시·군 시민사회발전 및 공익활동 지원체계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③ 경기도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가 지속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④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공익법인 등 공익활동 단체 실태조사, 관련 제도개선
⑤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기부금 및 모금 활성화
⑥ 공익활동단체의 회계·행정·법을 온라인 활동 전문가 자문, 지원체계 마련

#### 1. 정책과제 세부내용

##### ① 경기도 시민사회발전 및 공익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제·개정

-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에서 시·도에 제안될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한 경기도 공익활동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필요
- 조례 개정을 통해 [ 경기도 시민사회 발전 기본계획 ] 수립의 근거 마련 필요  
 ⇨ 2020년 국무총리실에서 시민사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완료 예정
- 조례 개정 과정에서 시민사회발전과 시민참여, 공익활동 지원 등 관련 조례의 중복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② 시·군 시민사회발전 및 공익활동 지원체계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 2021년 본격화 될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지원 사업 확대  
 ⇨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지원 사업은 31개시·군 중 5개 정도의 시·군센터 설립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정규예산 편성을 통해 31개 시·군 모두에 지원할 필요 있음
- 시·군 공익활동지원 사업의 통일성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필요  
 이를 위해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 운영비의 일부 지원 필요
- 시·군 시민사회네트워크 활성화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 필요  
 ⇨ 경기도 시민사회 아카이브 구축 등 정보 축적과 교류사업 지원 필요

##### ③ 경기도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가 지속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 경기도 공익활동가 기본소득 ]등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 필요
- 청년, 시니어 일자리 창출 사업과 공익활동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체험사업은 1회성 예산으로 예산으로 편성되어 지속성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 사회적경제 일자리지원사업과 공익활동가 일자리지원 사업 간의 형평성 제고 필요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자리지원사업의 경우 3년간 지속적 지원 가능

##### ④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및 공익법인 등 공익활동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경기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2,500여 단체의 운영과 사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 필요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련법,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경기도 공익활동 관련단체 및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가 필요  
 ⇨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자원봉사 등 관련 활동과 단체 및 조직 간의 협력 방안 마련

## ⑤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자발성·지속성을 위한 기부금 및 모금 활성화

- 시민사회단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형평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필요
  - ⇒ 정치자금 후원의 경우 전액 세액공제 됨, 시민사회단체 기부의 경우 10% 세액공제
- 경기도와 시·군의 공익활동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시민의 참여 기반 마련 필요
  - ⇒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강화와 경기도 공익활동 컨퍼런스 등 개최 검토
- 가칭[시민공익활동펀드]등 시민참여 후원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와 시·군 정책 필요
  - ⇒ 일부 지자체에서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매칭 방식의 후원기금 조성 등 검토 필요

## ⑥ 경기도 공익활동단체의 회계, 행정, 법률, 온라인 활동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지원체계 마련

- 회계교육과 자문, 공통 회계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회계 투명성을 위한 지원 필요
- 경기도 공익활동지원 자문단 등 분야별 자문네트워크 구성과 지원 활동 필요

2020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민관합동 정책토론회사업**  
**결과보고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Gyeonggi center for Public Interest Support